# 2018년도 업무계획

2018. 1.

중소벤처기업부

# 목 차

Ⅰ. 2017년 성과와 평가 ····· 1

Ⅱ. 2018년 업무추진 방향 ····· 4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 ····· 6

1.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····· 7

2.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····· 18

3.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····· 25

4. 더불어 잘사는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 ····· 43

5. 소상공인·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····· 52

# Ⅰ. 2017년 성과와 평가

## 1 창업·벤처기업 육성

### ◇ [성과] 창업환경 순위가 최초로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성과 창출

○ **(창업)** 신설 법인 증가, 규제개선 등으로 **창업 환경 순위가 최초로 10위권 내 진입** ('16, 11위 → '17. 9위, WB)

○ **(투자) 추경 등으로**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에 힘입어, **신규 투자금액**도 **2.4조원에 달하는** ('16, 2.1조원) **최고 성과 달성**

○ **(재도전)** 정책금융 연대보증 전면폐지 방침 등에 따라, **연대보증 면제 실적**(전년 대비 49.0% ↑) **및 재창업자 비율** 증가 ('14, 27.4% → '16, 32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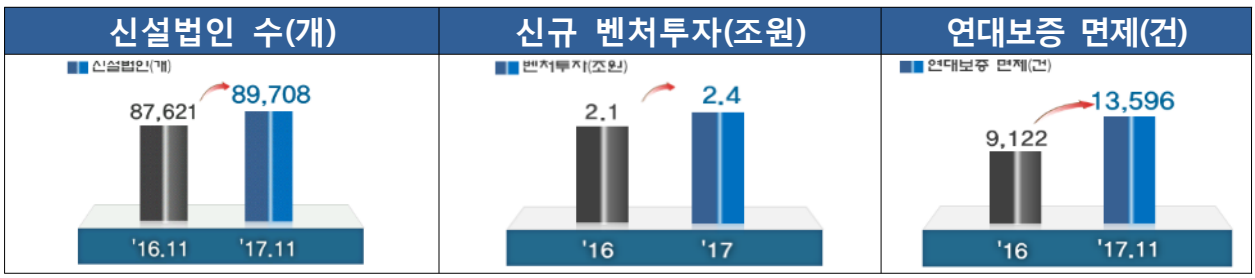


### ◇ [반성] 창업의 질적 수준이 낮고, M&A 활성화 등이 여전히 미흡

○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석·박사급 **우수인력의 창업**이 여전히 **부족**

* 창업자 중 석·박사 비중은 5.3% (14년, 창업 7년내 기업 198만개 기준)

○ **세계 215개 유니콘기업** 중 **국내기업은 2개**이며, 혁신 창업을 통한 **자수성가형 부자 비중***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

* 창업형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(피터슨연구소, %) : (美) 32.1, (日) 63.0, (韓) 18.5

○ **공정경제 정책의 실효성 부족**, 대기업 및 투자자의 인식과 참여 부족 등으로 **M&A 활성화**가 미흡

* 벤처투자 회수비중('16년, %) : (美) M&A 94 vs. IPO 6, (韓) M&A 11 vs. IPO 89

## 2 중소기업 성장 촉진

### ◇ [성과] 중소기업 수출이 늘어나는 등 혁신역량이 일부 개선

○ 보호무역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**수출 중소기업 수** 및 **수출액**이 모두 **전년대비 증가**

* 수출중소기업 수(개사) : ('15) 89,364 → ('16) 91,855 → ('17$^{e}$) 92,455 (0.6% ↑)
* 수출액(억$) : ('15) 962 → ('16) 995 → ('17$^{e}$) 1,075 (8.0% ↑)

○ **스마트 공장이 확산**되고, 중소기업 **R&D 투자비율**도 지속 **증가 추세**

*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수(개) : ('15) 1,240 → ('16) 2,800 → ('17) 5,003
** 매출액 대비R&D 투자(%) : ('14) 1.27 → ('15) 1.28 → ('16) 1.33

### ◇ [반성]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확대되고, 대·중소기업 격차도 여전

○ **R&D · 수출 예산 확대**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의 **기술혁신 역량**은 선진국 대비 **낮고***, **수출 상위기업의 글로벌 성장도 정체****

* R&D예산('16→'17, 억원) : 9,563→9,601 vs. 기술격차('15→'16, 년) : 미국 1.8→2.1, 일본 1.6→1.9
** 수출선도 중소기업 비중(1천만불 이상, %) : ('15) 2.0 → ('16) 2.0 → ('17) 2.1

○ **대기업과의 격차가 여전**하고, 이로 인해 청년 등 **우수인력**의 **중소기업 취업 기피**

* 대기업 대비 중기 임금비중(%) : ('13) 62.1 → ('17.1~10) 63.4
* 이직률 (%, '16) : (대기업) 3.0 《 (중소기업) 4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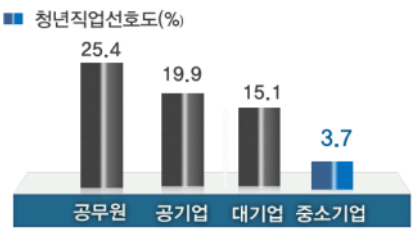


- 대 · 중기간 격차는 '**우수인재 유치 부족 → 혁신 한계** → 매출 정체 → **임금지급 여력 하락 → 취업 기피**'로 이어지는 **악순환 지속**

○ 경기침체, 정책지원에 안주 등으로 **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수준**

* 한계기업수/비중(외감기업 대상) : ('14) 2,694(14.4%) → ('15) 2,754(15.0%) → ('16) 2,666 (14.6%)
** 정책금융 10년 이상 지원기업 비중 (%) : (기술보증) 12.8, (신용보증) 22.8

## 3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

### ◇ [성과] 정책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 등 일부 성과 창출

○ **(소상공인)** 협동조합·소공인에 대한 **정책지원 효과로 매출이 증가**

|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前後 매출증감(%) | 정부정책 수혜 소공인 성과('16) |
|---|---|
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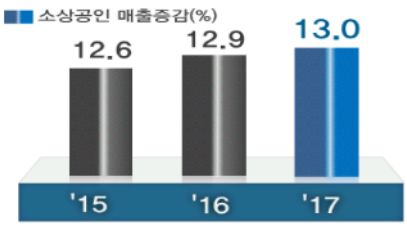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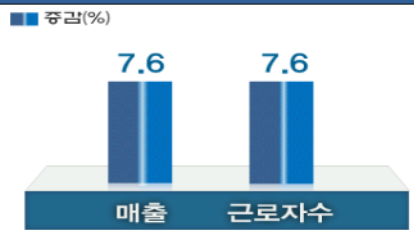 |





○ **(전통시장)** 온누리상품권 판매, 주차장 보급 등으로 **매출확대 기반 마련**

- **온누리상품권** 판매는 '16년 및 17년 **연속으로 1조원 달성**

  * 판매액(억원) : ('14) 4,801 → ('15) 8,607 → ('16) 10,945 → ('17) 10,743

- **주차·편의시설 확충** 등 편리하고 안전한 **쇼핑환경 조성**

  * 주차장 보급현황(%) : ('15) 68.9 → ('16) 70.9 → ('17) 72.3

### ◇ [반성]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수익성 악화 및 생존율 저하 지속

○ **생계형 업종** 중심으로 **밀집도**가 **높아, 수익성 악화 및 생존률 저하**

* 1인당 월평균 매출(만원) : ('10) 1,538→('15) 1,863
* 창업 5년 후 생존률 ('15) : 27.5%

<주요업종 밀집도 (사업체수/천명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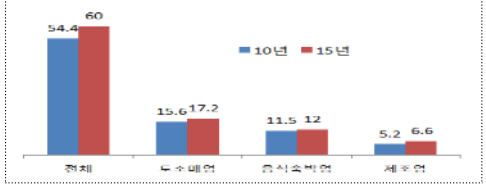



○ **대형 유통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**,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삶의 터전인 **골목상권의 피해가 가중**

* (이태원 경리단길) 맛집, 카페 등 창업 확대로 상권이 활성화되었으나, 임대료가 70%이상 상승하여, 기존 상인들이 상권에서 내몰림

○ 전통시장 **상인 고령화**로 소비자의 요구에 발 빠른 대응에 한계

# Ⅱ. 2018년 업무추진 방향

◆ **중소·벤처·소상공인의 수호천사,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** ◆

- 새 정부 **3가지 경제패러다임 실천을 주도**
- 유일한 신설부처로서 **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위한 기반 구축**
- **국민감동 실현을 위해 정책방식 개편** (서비스기관으로 역할 전환)

□ **중소기업 정책이** 새 정부 **3가지 경제패러다임 실천을 주도**

| 기 존 | | 개 편 |
|---|---|---|
| <대기업 중심 성장><br>· 일자리·**가계소득은 성장의 결과**<br>· **대기업**·수출 **중심 성장**<br>· **형식적 동반성장** | ⇒ | <세 가지 축 성장 전략><br>· 일자리·**소득주도 성장**<br>· **중소기업** 중심 **혁신 성장**<br>· 강력한 **공정경제** |

□ 장관급 신설부처로서 **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위한 기반 구축**

○ **중기청 소관** 정책 **중심** → **범정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·조정**

- 중앙·지방정부의 **1,34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**을 **총괄·조정**하고, **타부처** 중소기업 **관련 정책**에 대한 **공조 강화**(예 : 일안자금 홍보 등)

○ **법안제출권 無 및 집행에 치중** → **독자 법안제출권 및 기획기능 강화**

- 법령 제출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현안 등에 대한 **법률**의 신속·적극적 **역할 강화** (예 : 벤처투자법 제정 등)

- 중소기업 정책 **어젠더**를 적극 **발굴·제시**하여 **컨트롤타워**로 자리 매김

□ 국민감동 실현을 위해 정책지원 방식 개편→서비스기관으로 역할 재정립

○ 단편·분절적 지원 → **일관지원체계 구축 및 스크럼 방식 지원**

-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**탈피**하여, **R&D - 자금 - 인력 - 마케팅 - 수출까지 기업에게 필요**한 사항을 **일관 및 스크럼 방식**으로 **종합 지원**

○ 정부 주도 지원 → **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환**

- 민간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**민간이 주도하고, 정부가 후원**하는 방식으로 정책지원 방식을 개편(예 : 민간주도 벤처투자)

○ **탁상 행정** 중심 → **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 기획**

- 전문가 등을 통한 간접 현장 경험을 탈피하여 **직접 업계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뜻을 파악**하고 정책에 반영

○ 지원을 **관행적으로 지속** → **성과 분석을 통해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**

- **상시 성과 분석**·평가 등을 통해 **일자리 중심**으로 사업을 **통·폐합**

**< 중소기업 정책개편의 기본방향 >**

| 구 분 | 기 존 | | 개 편 |
|---|---|---|---|
| **새 정부 경제전략 실천** | 대기업 중심 **성장** | ⇒ | **세 가지 축 성장 전략**<br>(①일자리·소득 성장, ②혁신성장, ③공정경제) |
| **신설부처 역할 강화** | **중기청** 소관 **중심** | ⇒ | **범정부 중소기업 정책 총괄·조정** |
| | **법안제출권 無**·정책 **집행** 치중 | | **독자 법안 제출권 및 기획기능 강화** |
| **국민감동 실현** | **분절적·단편적** 지원 | ⇒ | **일관지원체계 및 스크럼 방식 지원** |
| | **정부 주도**<br>(Top-down 지원) | | **민간 주도**<br>**(Bottom-up 지원)** |
| | **탁상 행정** 중심 | | **직접 현장 소통·기획** |
| | 신설 사업은 **관행적 지속** | | **성과분석 통한 일자리 중심 개편** |

# 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| 비전 | 사람중심 중소·벤처기업으로<br>경제구조 大전환 |
|---|---|

| 목표 | 중소기업 | 창업·벤처기업 | 소상공인 |
|---|---|---|---|
| | 일하고 싶은<br>강소기업으로 육성 | 꿈을 실현하는<br>창업·벤처 생태계 | 공존과 활력으로<br>우뚝서는 소상공인 |

## ◈ 정책방향 개편 ◈

| 구 분 | 기 존 | | 개 편 |
|---|---|---|---|
| 새 정부<br>경제전략<br>실천 | 대기업 중심 **성장** | ⇒ | **세 가지 축 성장 전략**<br>(①일자리·소득 성장, ②혁신성장, ③공정경제) |
| 신설부처<br>역할 강화 | **중기청 소관** 정책 치중<br>**법안제출권 無 · 집행** 중심 | ⇒ | **범정부 중기정책 총괄·조정**<br>**독자 법안제출 및 기획기능 강화** |
| 국민감동<br>실현 | **분절적·단편**적 지원<br>**정부 주도** 지원<br>**탁상 행정** 중심<br>지원 사업 **관행적 지속** | ⇒ | **일관지원체계 및 스크럼 방식 지원**<br>**민간 주도 지원**<br>**현장 소통·기획 강화**<br>**성과평가를 통해 일자리 중심 개편** |

## 주요정책 - 5대 국정과제

| 격차완화<br>통한<br>인력난 해소 | 창업국가<br>조성 | 튼튼한<br>성장환경<br>구축 | 대 · 중기<br>상생협력 | 소상공인<br>자생력<br>제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일자리·소득성장 | 혁 신 성 장 | | 공 정 경 제 | |

## 전략 1 대·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

◈ 일자리 창출 - 임금 상승 - 근로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중소·벤처기업이 '일자리·소득 주도 성장'을 선도

①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개편

② 기업주(CEO) - 근로자간 상생혁신을 통한 임금상승 촉진

③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추진

④ 맞춤형 인력 양성·공급을 통해 빈 일자리 채우기

### ①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개편

□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

○ (정책 우대)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, 근로환경 개선기업,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등에 대한 **우선평가, 가점부여** 등 우대

- 정책자금, R&D 등 **주요사업 37개, 5.8조원** 규모에 **적용**

**< 주요정책 우대 방안 >**

| 구 분 | 우대 방안 |
|---|---|
| 정책 자금 | ▪ 고용창출 기업,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, 성과공유 기업을 우선 평가하도록 **'정책우선도 평가제도' 개편**<br>* 정책우선도 : (기존) **수출기업>성과공유>고용창출**>시설투자기업<br>→ (개편) **고용창출>일자리안정(신규)>성과공유**>수출기업>시설투자기업<br>▪ 일자리 부문(고용창출, 성과공유 등) **평가배점 상향**(10점 → 20점)<br>▪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가점(3점) 부여 |
| R&D | ▪ 고용창출, 성과공유, 근로환경 개선 실적·계획을 **평가지표에 신설(최대 20점)**,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가점(3점) 부여 |
| 수 출 | ▪ 고용창출, 성과공유, 근로환경 개선 실적·계획을 **평가지표에 신설**(최대 20점), 일안자금 수혜기업 가점(2점) 및 가점 사항 예외 |

**참 고** | **'18년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사업**

| 지원분야 | 사업명 | 예산('18) | 수혜기업 수 |
|---|---|---|---|
| 자금 | • 중진기금 정책자금(융자) | 3.7조원 | 2만개 |
| | • 기술보증기금(신규보증) | 2.5조원<br>(보증규모) | 8,300개 |
| R&D | • 기술혁신기술개발<br>• 제품서비스 기술개발<br>• 공정·품질 기술개발<br>• 월드클래스 300<br>• 산학연협력기술개발<br>• 상용화 기술개발<br>• 지역특화산업육성R&D<br>•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<br>•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| 7,932억원 | 7,000개 |
| 수출 | • 수출성공패키지<br>• 고성장수출역량강화<br>• 아시아하이웨이<br>• 글로벌강소기업 지원<br>• 단체바우처 해외전시회<br>• 무역촉진단<br>• 수출컨소시엄<br>• 업종별내수기업수출기업화<br>• 대중소기업동반진출<br>• 전자상거래수출지원<br>• GMD<br>•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<br>• 수출인큐베이터<br>• 온라인수출지원<br>• 융복합기술교류촉진 | 1,784억원 | 1.4만개 |
| 창업벤처 | • 창업도약패키지 | 500억원 | 1,000개 |
| 기타 | • 마케팅 지원<br>• 중소기업 재도약지원<br>• 중소기업 컨설팅 등<br>• 지역 스타기업 육성<br>•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| 426억원 | 1,400개 |
| **합 계** | | **5.8조원** | **4.3만개** |

○ **(직접지원 강화) 특별 보증제도** 운영 등 정책**지원 확대**

- **(세제감면) 일자리 창출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 확대**
('18년 **일자리** 창출의 **원천인 중소기업에게 6천억원 이상 추가 감면** 예상)

- **(특별보증)** 일자리 창출을 위한 **특화 지원 프로그램**을 **확대***(Good Job 보증)하여 **중소기업 고용 여력 확보** (5,000억원, 기보)

  · 고용창출(점핑잡, 쉐어링 잡)과 고용유지(베스트잡) **유형**으로 나누어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등 **지원내용**을 **차별화**

  * 굿잡 보증 신규공급(계획) : ('17년, 시범) 1,000억원 → ('18년) 5,000억원
  보증비율 확대(최대 95%), 보증료 0.4%p 감면, 보증금액 사정한도 우대 등

< 기보, Good-Job 보증 운영방안 >

| 대 상 | 유 형 | 지 원 요 건 | 지원내용 |
|---|---|---|---|
| 고용창출 | 점핑잡 |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&<br>20% 이상 고용증가 | ■ 보증비율 : 95%<br>■ 보증료 감면 : 0.4%p |
| | 쉐어링잡 |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, 경단여성, 장애인, 지방 일자리 등 | ■ 보증비율 : 95%<br>■ 보증료 감면 : 0.4%p |
| 고용유지 | 베스트잡 |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유지 | ■ 보증비율 : 90%<br>■ 보증료 감면 : 0.3%p<br>■ 인건비 사정 특례 : 3억원 |

- **(지역신보) 최저임금 인상**으로 **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**의 경영 안정을 위해 **특례보증** 지원(1조원)

- **(정책자금)** 중소기업의 **고용 유지효과 제고를** 위해 **일자리 창출 기업 이자환급*** **지원기준 강화**(대출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→ 9개월 이상)

  * 대출 후 신규 고용 창출 및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, 1인당 0.1%p씩 최대 2.0%p 이자 환급 (5천만원 이내)

- **(벤처펀드)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**한 **모태 자펀드**의 경우, 펀드 운용사의 **성과보수를 확대**하여 **고용창출형 벤처투자** 촉진

  · 벤처펀드별 **일자리 창출 실적을 점검·평가**하고 우수 펀드운용사에 대해 **모태펀드 출자 시 우대**

< 인센티브 운영방안(예시) >
① 투자금액 1억원당 2명이상 고용창출시 모태펀드 수익의 10%이내 성과보수 지급
② 청년 고용창출 시에는 모태펀드 수익의 15% 이내로 성과보수 확대지급

□ 중소기업 정책을 '일자리 중심으로 평가'하여 재편

○ **(대상) 금년에는 일정규모 이상**(예 : 100억원 이상)의 **주요사업**에 적용하고, '19년 중기부 모든 사업, **'20년 범부처**로 확대

○ **(평가내용)**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은 **기업의 일자리 양적 증가** 및 **질적 개선** 여부를 함께 평가

**<평가 예시>**

- **(일자리 양)** 직전 1년간 고용증가율, 고용창출 규모를 평가
- **(일자리 질)** 미래성과공유 협약, 성과급 지급, 공제·기금제도 운영, 스톡옵션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
- **(고용질서)** 최저임금법 위반기업, 고액·상습 임금체불기업은 감점 등 페널티 부여

○ **(평가절차)** 전부처 DB 등을 활용하여 기업 행정부담 없이 자동 산출

- **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**과 연계, 일자리창출·정부인증 여부 확인 후 **자동 배점부여** 등 **제출서류 최소화**

- 기업 제출서류는 사후검증을 원칙으로 하되, **거짓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정부지원 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** (법적근거 마련중)

< 일자리 중심 평가 추진절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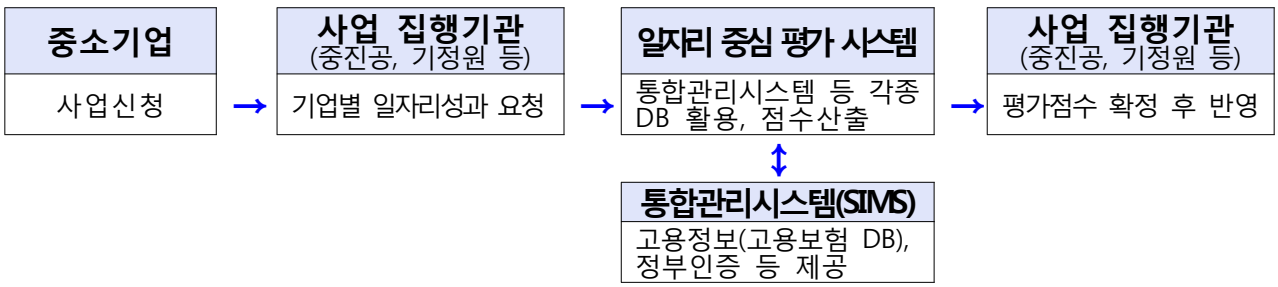


□ 신규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

① 소셜벤처 활성화

○ **(창업 촉진)**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(50% 이상)하는 **TIPS 운영사를 선정**하고, 관계부처 협업*을 통해 소셜벤처의 창업·사업화 지원

* 사회문제 해결형 R&D (과기부),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(고용부) 등

○ **(벤처 투자)**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**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1,000억원** 규모의 **'임팩트 투자 펀드' 조성**('18.상)

* 모태펀드가 80%를 출자(약 800억원)하고, VC가 20% 이상을 민간으로부터 모집

- **사회적 금융의 특성을 반영**하여 장기 펀드(10년 내외)로 운용하고, 설계 시 **사회적 성과 연계, 우선손실충당 허용** 등 특례 적용

○ **(보증)** 소규모의 사회적 기업 우대 보증을 **'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'로 확대 개편**(42→300억원)하고 **전액보증 허용** 등 지원 강화

* 우대내용 : 전액보증(90%→100% 보증), 0.5% 고정보증료 적용 등

○ **(지원인프라 확충) '소셜벤처 활성화 민관협의체'*를 구성**하고, 창업정보 종합플랫폼(K-Startup)을 활용한 정보 제공 강화

* (역할) 소셜벤처 투자 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, 성공사례 공유·확산 등

○ **(사회적 경제 문화 확산)** 청소년·일반인 대상의 **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**을 확충하고, 다큐멘터리 제작 등 **홍보 강화**

**⇒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마련('18.상)**

## ② 사회적 경제기업의 혁신성장 강화

○ **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선정***하여 판로, R&D, 교육 등 **관련 지원사업을 패키지**로 지원('18 시범, 20개사)

- 전문가로 구성된 **기업진단팀*****이 지원대상을 선정**하고, **성장 단계별 필요 자금을 지원**(2억원 한도)

* 10개 팀으로 구성하되, 각 팀은 소진공, 컨설턴트,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구성(3명)

** 기업별 장기 성장계획에 따라 2년에 걸쳐 단계적 지원이 가능토록 설계

- 선정된 사회적 경제 기업별로 **기업진단팀을 전담 배정**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**컨설팅 수행**

○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인할 수 있는 **사회적 경제기업(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마을기업·자활기업)**에 대한 **우대 보증**(150억원)

## ② 기업주 - 근로자간 상생을 통한 임금상승 촉진

### □ '내일채움공제'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장기 근무를 지원

○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**민간은행***까지 **확대**하고, **대기업·지자체와**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

* 전산시스템 개발(~'18.3)→기업은행(660여개 지점)을 통한 가입 창구 확대('18.4~)
** 울산시 200명, 제주도 100명, 부천시 100명, LH 200명(~18.3) 남동발전('18.하) 등

○ **청년내일채움공제** 만기(2년) 후 **내일채움공제로** 연계(3~5년) 강화

- 5년이상 연계시 청**년근로자** 및 **기업**에 대한 **세제지원*** 추진**

* 【기업】 연구·인력개발비 25% 세액공제(매년),
【근로자】근로소득세 50% 감면(만기 시)
** 「중소기업인력법」 및 시행령 개정(~'18. 상) 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(~'18.하)

- **7년이상 연계 후** 재직시 만기 **장려금 400만원** 추가 지원

* 청년내일채움공제(2년, 1,600만원), 내일채움공제(5년, 평균 2,500만원)+만기금(400만원)

○ 근로시간 단축기업 재직자의 **임금손실 보전**을 위해 **근로자·기업** 이 공동**적립**하는 **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추진**

* 연구용역('18.상), 제도설계('18.하), 공제 도입('19.상)

○ 중소기업 R&D사업에 참여한 우수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**R&D 내일채움공제** 제도 도입

**※ 내일채움 공제 개요 및 효과**

- **개요 :**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공동(사업주는 핵심인력 납입금의 2배 이상 납입, 정부는 납입액 세액공제)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만기시 핵심인력에게 지급
- **가입효과** : 공제가입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액은 월 평균 30만원으로, **월평균 임금이 10.9% 상승**(323만원 →353만원)
  ➔ 대기업 대비 **임금격차 5.9%p 감소**

## □ '미래성과공유제' 도입·확산을 통해 임금 상승 활용

○ 「**미래성과공유제***」 도입기업에 대한 **세제혜택 등 인센티브** 마련

* 중소기업이 미래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고, 정부가 도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지원사업 우대 등 제공

○ 성과공유 확산 붐 조성을 위해 **'성과공유 10만 확산운동'** 추진 ('17.6.27. 결의대회 계기로 시작)

* (캠페인 방식) SNS에 기업이 참여 동영상·사진을 공유하고, 후속 주자를 추천

* (도입기업수 목표) ('18) 1만개 → ('20) 5만개 → ('22) 10만개

○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수령하는 **성과급**에 대한 **세금** 감면 추진

**외국 사례**

• **영국** : 종업원들이 급여에서 공제하여 저축한 자금으로 옵션이 설정된 자사주를 매입(SAYE), 회사는 SAYE 운영비 손비인정, 종업원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 면제

○ **성과공유 모범사례**를 선발하여 **'존경받는 기업인'으로 포상**하고,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**CEO 교육** 실시

## □ '우리사주·스톡옵션'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○ 창업자-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**우리사주** 등 **성과공유 컨설팅**을 실시하고, **우리사주**에 대한 **세제지원 확대***

* (현행) 400만원 소득공제 → (확대) 창업·벤처기업에 한해 1,500만원 인정

○ **핵심인재**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**성장과실**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**스톡옵션 비과세**를 10년만에 재도입

-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**2천만원**까지 **비과세** 혜택 적용 ('18.1 시행)

□ **재직자 역량강화 지원 → 생산성 향상 → 실질임금 상승 유도**

○ **4차 산업혁명**에 대응, ICT 융합 등 산업현장 미래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**재교육형 계학학과 확대**

* '17. 46개 → ('18) 51개

-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성과부진 학과 신입생 모집제한 및 학과 폐지, 사업비 차등지원 등 개선방안 추진

○ 기술 및 경영연수 등을 통해 **재직자 전문역량 강화**(연 4만명)

○ 시·공간적 제약이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, **무료 공개 온라인 교육 시스템** (SME-MOOC) **활성화***

* 4차산업 분야 주요 콘텐츠 개발, 영상토론 시스템 도입, 수요자 편의기능 확충 등

□ **최저임금 인상의 조기정착 유도 및 부담완화 지원**

○ **229개 기초지자체별 홍보전담반***을 구성하여 상점가, 전통시장 등 밀집지역 중심으로 **찾아가는 현장홍보 추진**

* 지방청(1직원, 1 지역 홍보)+ 유관기관(지부)+협단체(지부) 직원으로 구성

- 일안자금 홍보 상황실을 설치하여 **기관별 일일 홍보실적 점검**

- **일안자금 신청기업**이 지원사업 참여시 **가점을 부여하여 집행 촉진**

○ 소상공인·영세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된 중기부 26개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경영제반 여건 개선

* 26개 대책중 완료 6개, 추진중 18개, 중장기 검토 2개

○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완화,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 **추가대책 강구**('18.1)

○ **근로시간 단축 확정시, 실태조사를 통해** 업계 부담 정도와 정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**정부합동 지원방안 마련**

* 스마트공장 확산, 노후설비 교체, 생산공정혁신 R&D 및 인력관리 컨설팅 도입 등

## ③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추진

※ 사업장 **규모가 작아**질수록 **산재사고 및 사고사망만인율** (1만명당 사고사망자수)은 **증가**

| 구분 ('16년) | 전체 | 5인미만 | 5~49인 | 50~99인 | 100~299인 | 300인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망자 수(명) | 969 | **301** | **404** | 95 | 97 | 72 |
| 사고사망만인율(‰) | 0.53 | **1.10** | **0.51** | 0.50 | 0.39 | 0.22 |

### □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

○ **(우수기업)** 안전산업 **우수 중소기업**의 **사업화 지원**을 위해 R&D,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*

* 우대 예시 : 가점 부여, 지원한도 우대 (기업당 융자한도 45억원→70억원) 등

○ **(재해 빈발기업) 사망사고 빈발 사업장** (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)에 대해 정부지원대상 선정시 **감점 부여**

### □ CEO의 안전관리 관심 제고

○ 중소기업 경영자의 안전 중시 경영마인드 확립을 위해 **중소기업 CEO 연수과정**에 **안전보건 교육과정 신설** ('18~, 연간 2천명)

-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를 우선 활용하고, 재해사례 분석 등을 통한 보완 추진

### □ 위험·유해 공정 작업 환경 개선

○ **위험 분야** 생산 공장 등에 대한 **로봇 자동화 공정 설계, 로봇 시스템 설치 및 교육** 등 지원 ('18, 30억원)

**사 례**

• **(주) 연우** : 3D(화학연마) 공정 자동화로 고급인력 기술공정으로 전환 →산업재해율 개선(2.7%→ 0.1%), 납기준수율 상승(99.5%)

○ 50인 미만 **소규모 사업장**의 **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 비용 지원 강화** (고용부)

## ④ 맞춤형 인력 양성·공급을 통해 일자리 매칭 강화

### □ 현장수요 중심의 산·학 맞춤 인력양성·공급 확대

○ **(기능인력)** 우수 **기능인력 양성** 및 **노동인권 강화**

- 중소기업 특성화고 확대*를 통해 **우수 기능인력 5만명**을 양성하고, 중소기업 취업 연계

* ('17) 306억원, 181개 학교(4.5만명) → ('18) 339억원, 200개 학교(약 5만명)

- 특성화고생의 노동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해 **현장실습**을 **학습중심**으로 **개편**하고, **노동인권·안전교육** 등을 강화

○ **(기술인력)**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우수 졸업생을 기술·연구인력으로 양성하는 **'영마이스터' 육성과정*** 신설 추진

* 특성화(2년)+전문대(2년) 연계 전문이론·기술교육 실시, 수업료 지원(우수인재 유치), 계약학과(학·석사) 등으로 연계하여 경력·학력 단절 없는 청년 명장 성장유도

< 영마이스터 육성 시스템 >

|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(2년) | ▶ | 영마이스터 육성과정(2년) | ▶ | 중소기업 의무근무(2년) |
|---|---|---|---|---|
| 기초이론·기능숙련 교육 | | 전문이론·기술, 과제해결, 창업교육 | | 연구개발 경험 및 숙련기술 습득 |

**①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성장 ② 기술창업으로 일자리 창출**

○ **(연구인력)** 중소기업의 **연구인력 부족문제 해소**를 위해 기업연계 연구인력 양성, **석·박사 인력 채용** 등을 지원*('17. 857명)

* 연구인력 양성(301명)/연구인력 채용지원(556명)

□ **인력양성 및 매칭을 통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 추진**(신규)

○ **청년 제대 장병** 중 진로결정이 안된 인재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제고 및 우수 **중소기업 취업연계** 추진(국방부, 중앙회 등과 민관협업)

- '18년 중 육군 2개 사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, 성과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

* (추진체계) 구직자 D/B화(국방부) → 진로상담·진단(중앙회 : 민간전문가) → 맞춤형 교육(중기연수원) → 우수기업 발굴 및 채용연계(기업애로센터+ 협·단체 협조)

○ 청년 취업 준비생의 구직지원을 위한 **'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'** 신규 도입(신설)

- **(목표)** 1:1 전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**3년간 1,000명**을 **양질의 중소기업 취업** 보장

- **(절차)** 중소기업 우수 **중소기업 구인·구직 DB**를 **구축**하고, 현장 실사 등을 통해 **구직 희망기업 발굴** (1차 : 2천개사 + α)

· 특성화고, (전문) 대학 졸업생 및 미취업자 대상 분야별 **집중 교육**(1~2개월) 실시 후 **3년간 무제한 구직·구인 매칭** 제공

**< 지원 절차 >**

| **취업 희망자 모집** | ➔ | **준전문가 양성과정 (2개월)** | ➔ | **기업 발굴 및 취업 매칭 (3년간)** |
|---|---|---|---|---|
| 중기연수원 | | 중기연수원 | | 기업인력 애로센터 |

□ **기업인력애로센터 및 채용 박람회를 통한 구인-구직 매칭 지원**

○ **기업인력애로센터** (전국 16개)의 맞춤형 인력매칭 지원을 통해 **연간 2,000명의 맞춤인력**을 중소기업에 공급

○ 지방중기청의 다양한 **채용 박람회**를 통한 구인-구직 매칭 지원

## 전략 2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

◈ 돈·실패 걱정 없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'창업→투자·회수→재도전'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와 新성장 동력 창출

① 민간 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활성화

②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및 회수 환경 조성

③ 재도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

### ① 민간 역량을 활용한 혁신 창업 활성화

□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창업자 선별·육성을 강화

○ (민간 중심 창업기업 선별) 성공가능성 높은 창업자 선별을 위해, 민간 투자자가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"TIPS 방식" 확산

- 사업 주관기관의 先투자 의무화, 투자자·액셀러레이터의 기업 추천, 투자유치식 사업발표(피칭) 도입 등을 검토·추진

○ (민간역량 활용) 대기업·중견기업이 혁신 창업을 직접 육성

- 대기업 등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설하고, 연구개발 비용 등을 모기업이 先투자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('18. 100억원)

* 과학기술분야 연구원(총 45.3만명) 중 70.1%가 민간 기업 소속으로 분사창업 활성화 필요

- 사내창업팀이 분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'예비벤처'에 포함하고, 분사할 경우 R&D·마케팅 등 패키지로 지원

○ (도약단계 지원) 창업 3~7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'창업도약패키지'를 통해 "죽음의 계곡" 극복 지원('18년 500억원)

- 사업모델 혁신과 경영전략 멘토링, 제품 검증·개선, 판로개척 및 글로벌 진출, 투자유치 등 패키지 지원 강화

## □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 창업을 촉진

○ **(4차 산업혁명 분야 지원)** 선정평가 시 **가점(1점 내외) 등 평가우대, 육성목표 설정**(할당제 또는 별도트랙 마련)을 통해 혁신창업 집중 육성('18~)

**<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 (예시) >**

| 디지털 역량강화 (5) | ICT제조업 융합 (4) | 신시장 창출 (6) |
|---|---|---|
| AI·빅데이터, 이동통신, 정보보호, 지능형센서반도체, AR·VR | 스마트가전, 로봇, 미래형 자동차, 스마트공장 | 바이오,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홈, 스마트 에너지, 스마트 안전, 스마트 물류 |

○ **(문제해결형 창업경진대회)**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민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"문제해결형 프로젝트" 추진

- **범부처 창업경진대회**(도전! K-스타트업)를 통해 드론, AI 등의 분야 창업팀 문제해결 과정을 TV방송으로 방영

○ **(팀창업 촉진)** 4차 산업혁명 시대 융·복합 확산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·배경 출신 인재들의 **"융합형 팀창업"** 촉진

* TIPS, 창업선도대학, 선도벤처연계기술지원 등 사업에 우선 선정

- **청년**의 **아이디어**와 **중장년**의 **경험**을 연계하는 **세대간융합 창업 지원 강화**('18년 128억, 120팀)

* 청년-중장년 매칭을 통해 세대융합 창업(3년 미만) 기업에게 인프라부터 사업화 자금(1억원 이내)까지 일괄지원(2월~)

## □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의 창업허브 조성

○ **(혁신센터)** 지역의 창업·**중소·벤처기업, 대학·연구소 등 다양한 민간의 혁신주체들이 상시 교류·협력**하는 "Open Community" 조성

- 다양성·자율성·개방성이 보장되는 지역별 혁신창업 허브로 재편

- **창업초기 기업 중심으로 기능을 정비**하고, 모태펀드 등과 연계하여 **투자기능 확충**

○ (**메이커스페이스**)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**국민 누구나** 창작활동과 창업시도를 할 수 있는 **메이커스페이스 신설**('18년 235억, 65개소 신규)

-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, 온라인 플랫폼 등 인프라 지원과 융·복합 프로젝트, **메이커 문화행사** 등 프로그램 운영

* (일반형) 일반인 대상 '18년 60개소, (전문형) 전문 창작활동과 사업화 연계 지원 '18년 5개소

○ (**지역 혁신창업클러스터 조성**) 지역에 **혁신창업 클러스터를 구축**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생태계를 지방에도 조성

- 지자체, 대학·연구소 등 **지역혁신주체와 협업**하여, 창업·투자 집중 지원, **혁신문화** 구축, **글로벌인재 유입** 기반 마련 등 추진

* 정부 출연연 등 기술·인력기반이 갖추어진 지역(예: 대전)에 시범사업 추진

## □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

○ (**민간주도 전환**) 기보 등 공공기관 주도의 심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**시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*으로 전환**

* VC, 선배벤처 등으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구성·운영

○ **벤처기업 유형을 혁신성 위주**로 전면 **재편**

- (**보증·대출 유형 폐지**) 상환 부담이 있는 보증·대출로 확인받는 유형은 폐지(경과조치 : 現 확인기업은 유효기간(2년) 만료까지 인정)

- (**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**) 기술성·사업성·글로벌 잠재력 등 요소를 평가하여 새로운 성장기업군 선별

- (**민간주도 유형 확대**) **벤처확인 투자자 인정범위*를 확대**하고, 기업의 **연구개발 인프라 인정범위** 확대**

* (기존) 창투사 등 13개 → (추가) 액셀러레이터, 크라우드펀딩 등 4개

** (기존) 기업부설연구소 → (추가) 연구개발전담부서, 창작연구소, 창작전담부서

○ (**규제완화**) **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을 최소화**(23개 → 5개)하고, 서류작성 등 연장 시 불편해소를 위해 **유효기간 확대**(2년 → 3년)

## ②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및 회수 환경 조성

### □ 민간 중심으로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

○ 민간이 투자 분야를 先제안하고,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하는 '**민간(수요자) 제안 방식**' 도입

○ 민간 자금 유입확대를 위해 **콜옵션 확대, 민간 출자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·운영** 등 추진

### □ 혁신모험펀드를 통한 민간투자 마중물 확대

○ 재정·정책금융·회수재원 등 공공부문에서 3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출자하여 '18~'20년 **총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**

* '18년 중 2.6조원 내외의 펀드를 1차 조성하여 신속한 투자 추진

### □ 「벤처투자촉진법」 제정을 통해 투자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

○ (**개편방향**)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일원화하고, **모태출자를 받지 않은 투자조합**은 창업투자 의무 외에 **최소 규제**로 자율성 강화

○ (**진입규제 완화**) 창업 초기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**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**하고,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은 현실화*

* (현행) 자격증, 학력 중심 → (개선) 창업, 투자 경력 중심

○ (**투자규제 완화**) 창투사 및 조합이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·투자할 수 있도록 **투자 대상·범위·방식**에 대한 **규제 최소화**

- 창업기업 의무투자 비중 완화, 벤처투자 업종 확대, **새로운 투자 방식** (예 : SAFE* 등) 도입 등

*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형태 투자방식

□ **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 촉진**

○ **(자율성·독립성 제고)** 코스닥위원장을 분리선출(現 본부장 겸임)하고, 상장 및 상장폐지 등에 있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 강화

-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거래소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하고, 본부 내 조직개편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여 **독립성 강화**

○ **(세제·금융지원)** 개인투자자에 소득공제 혜택(투자금의 10%)을 부여하는 **「벤처기업 투자신탁」 활성화를 위해 운용규제 완화**

* 벤처기업 신주투자를 50→15%로 완화, 운용규제 준수 및 조정기간 6개월 설정 등

○ **(상장요건 개편)** 초기 스타트업,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 등의 상장 유도를 위해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**불합리 규제 폐지**

○ **(연기금 투자유도)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* 개선** 등을 통해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**코스닥 투자비중** 확대를 유도

* 연기금의 투자수익률 성과평가의 기준 지표로, 현재 지수는 "KOSPI 200" 중심으로 구성

- 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(0.3%) 면제, 코스닥 기업의 신성장 R&D 세액공제 확대(30→40%, 중견까지) 등 **세제지원 강화**

□ **M&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**

○ **기술탈취**가 M&A보다 쉽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**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**의 대폭 **확대** 검토(상생협력법 개정)

* (현행)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-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→
(개선)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

○ 해외자본의 국내 M&A 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중국 등 **해외 VC와 국내 스타트업 간 만남의 장**을 마련하고, **M&A 매물정보를 제공**

## ③ 재도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

### □ 정책금융 연대보증 전면 폐지('18~)

○ **7전 8기가 가능한 창업국가 조성**을 위해 **정책금융기관**(중진공, 신·기보 등)의 **연대보증 폐지 추진** ('18.3)

*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: ('17.8월)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→ ('18.3) 모든 기업

- 연대보증을 대체할 대안시스템으로, **'책임경영심사'와 '투명경영이행약정' 도입**

**< 책임경영심사 및 투명경영이행약정 주요내용(안) >**

| |
|---|
| · **(책임경영심사)** 법인대표의 도덕성·책임성·신뢰성 등 3개 분야 평가(심사항목 예시 :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, 주주임원 가지급금·대여금 보유 여부 등) |
| · **(투명경영이행약정)** 법인대표·정책금융기관 간 투명경영 이행계약 체결(약정내용 예시 : 경영탈퇴 및 지분 1/2 처분시 사전동의, 횡령·배임·자금유용 금지 등) |

### □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한 채무자 정상화 지원

○ **(부실채권 정리촉진)** 정책금융기관 **부실채권의 조기 정리**를 통한 채무자 정상화 및 재기지원 추진

- 부실채권이 적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**내규정비**하고 ('18.상) 및 **제도 시행** ('18.하)

- **(정책금융 채무조정 확대)** 부실채권 상환촉진을 위해 **감면대상**(이자→원리금) 및 **분할상환기간**을 확대(5년→10년 이상)('18.상)

○ **(압류제외 최저생계비 확대)** 파산 시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범위를 800만원에서 1,080만원으로 확대('18.하)

* 월 150만원 x 6개월 → 월 180만원 x 6개월

### □ 재기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재창업자 육성

○ **재도전성공패키지, 재도전기술개발**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**고도화**를 통해 재창업자 육성

- 교육, 멘토링, **사업화 비용 등을 일괄지원**하는 **'재도전 성공패키지' 운영** ('17. 추경 150억원 298명 → '18. 150억원, 300명)

- **민간투자와 연계한** 재도전 **프로그램*** **시범 운영**

* 재창업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발굴·투자하는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(1억원), R&D(1.5억원), 엔젤매칭펀드(1억원), 사업화 후속지원(0.5억원) 등 매칭지원

## □ 재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

○ 자금 융자 및 전문가 상담·멘토링 등 **원스톱 지원**을 실시하는 **재도전종합지원센터 추가 개소(4개소)**

- 기존 9개소* 외에 **경기북부, 울산, 전북, 강원 등 증설**

* ('14)서울, ('15)부산·대전, ('16) 인천·광주·대구·경남, ('17) 경기·서울서부

○ **(실패용인 문화 확산)** 혁신적인 **실패사례 공모, 재도전의 날 행사** 등을 통해 **실패**를 **용인**하는 **문화**를 **확산**

## □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지원

○ 중소기업관련 각종 **현안·이슈**에 대응한 **맞춤식 컨설팅***을 발굴·서비스하여 기업 만족도 제고

* 종전 경영·기술 컨설팅에 스마트공장 시스템구축, 최저임금제, 기술탈취 대응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운용(57.5억원, 420개사 대상)

○ **사업전환** 및 **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대상 확대**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영 정상화 지원(사업전환자금 1,000억원, 209개사/구조개선전용자금 290억원, 171개사)

* 사업전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전환 전용 R&D 도입(7.8억원)

** (구조개선자금 평가 개선) 신용위험등급 반영을 제외하고, 기술사업성평가 중심으로 평가

○ 금감원·은행*, 회생법원** 등 관련 **유관기관**과의 **협업**을 통해 **회생 및 재기 지원 강화**

*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사업 연계 지원

** 협업 법원을 전국으로 확대(12→14개)하여 회생컨설팅 수혜지역 확대

○ **범부처** 차원의 **통합구조조정 관리체계 도입**(법무부 협업)

- 「통합 구조조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안)」 제정 추진

* 관계부처(금융위, 기재부, 산업부, 중기부) 협의, 공청회 등 법률안 보완('17.9~11) → 법률안 제출('18)

## 전략 3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

◈ 신기술·제품 개발 → 시장진입 → 글로벌화"의 단계별 혁신 성장이 가능하도록 일관지원 체계구축하고 성장의 걸림돌 규제를 혁신

① 기술(R&D) - 인력 - 금융 - 마케팅 - 수출의 일관지원체계 구축

②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혁신 성장 가속화

③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의 효율화 추진

### ① 일관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

□ R&D - 인력 - 금융 - 마케팅 - 수출의 일관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촉진

○ 기업 수요에 기반 한 스크럼 및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

- (현장중심 기업수요 조사) 중소상공인이 밀집한 산업단지,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애로·정책수요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파악

- (스크럼 및 패키지 방식) 일자리 창출과 성장성 등이 높은 기업군에 대해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사업을 종합·연계 지원

<스크럼 방식 추진체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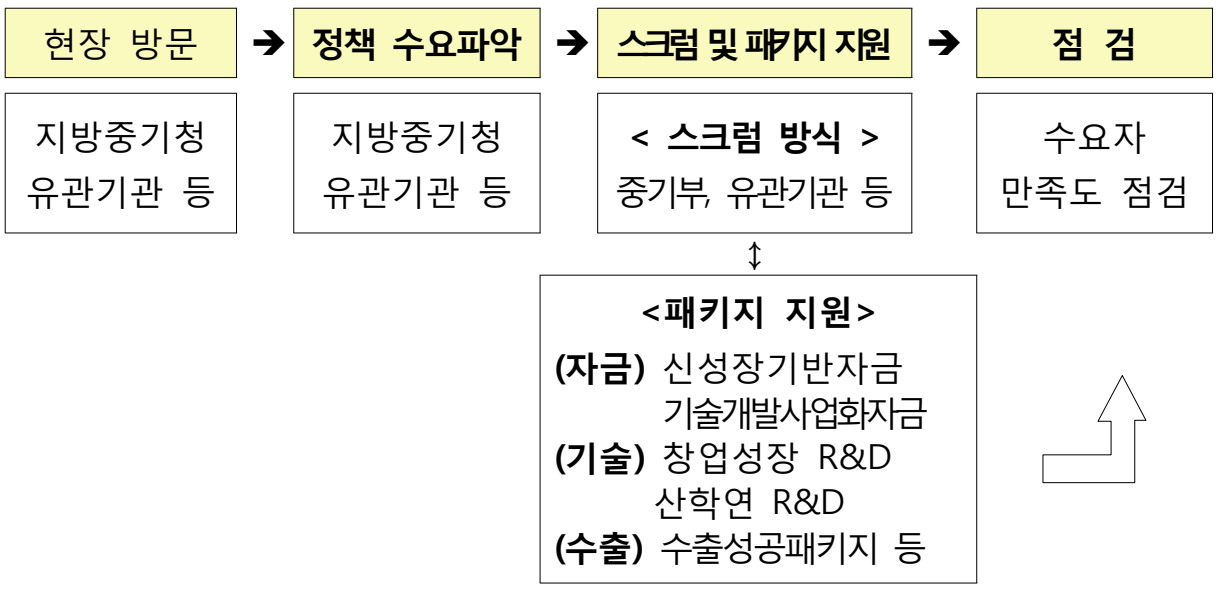

## R&D :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

< '18년 중소기업 R&D 사업 현황(1.1조원) >

### □ 창의·도전적 R&D 지원 강화

○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**3대 전략분야·15대 핵심기술**,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**5대 서비스 전략분야** 지정

* (투자확대) 15대 핵심기술('16, 24.2% → '22, 40%), 5대 서비스 전략분야('17년 100억원 → '22년 1,000억원)

○ 창의·도전성이 우수한 상위 과제에 대해 연구 **수행의 자율성 강화**

○ **성실실패(=성실수행)* 인정범위 확대**, 참여제한·환수액 감면 근거 마련 등 **도전적 R&D 분위기 조성**

* 불성실실패 환수금액 부분감면제도 도입

## □ 민간 주도로 R&D지원 방식을 개편

○ **시장**에서 **성과**를 **검증**받은 기업에게 **기술개발 지원 확대**

- 창업, 정책자금, 해외마케팅, 지역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**시장**에서 **우수**한 **성과**를 거둔 기업의 **R&D 사업 참여 우대**

- **민간**이 **선별**한 **유망기술**의 **개발**을 **적극 지원**하기 위해 벤처투자유치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R&D사업 참여를 우대

  * 예시 : 엔젤, 펀드, 회사채 등을 통해 1억원 이상 투자유치 시 가점 부여

○ VC 등 **시장전문가의 평가참여 의무화**

- R&D 심사·평가 단계에서 중진공·기보·기업은행의 **기술평가**(기술보증·융자) 및 **VC** 등을 활용한 **민간 평가기능 반영 확대**

- VC, 투자심사역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기술사, 기술지도사 등 기술·경영전문가로 시장평가위원을 구성하고 **평가위원회**에 **의무참여**

## □ 지역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R&D 지원 강화

○ (혁신거점) 창조경제혁신센터, 테크노파크(TP), 대학·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&D지원(571억원)

- 우수 산·학·연 집적지구 소재기관, R&D 사업화 우수역량 보유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및 협력연구 촉진

○ (문화조성) **혁신창업가, 엔젤투자자, 벤처캐피탈(VC)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**하고 융합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&D 지원 확대

○ (지역특화)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의 수요와 산업 특성 등을 반영한 **R&D 기획 역량강화 교육** 추진

  * 기초지자체(시·군, 지역 특구 등), 테크노파크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홍보, 수요파악 및 교육시행

□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역량 제고

○ **(전방위 지원)** 원활한 **스마트 공장 구축·운영 생태계** 조성을 위해 **"구축기업 - 공급기업 - 운영인력"**에 대한 전방위 지원

- **(구축기업)** 기구축 스마트공장 중 **성과가 높은 업종***에 대해 신규 구축을 **중점 지원**(특화 솔루션개발, 마케팅 등, '18, 20억원)

* 성과지표별 高성과 업종(2,800개 기업대상조사, '16.12) : 제약가공식품(생산성 향상), 화장품·용접접합(불량률 감소), 가공식품·PBC제작(원가절감), 제약·패션(납기단축)

· 중소기업이 **벤치마킹**할 수 있는 **시범공장**을 **지역·업종·규모별**로 다양하게 **구축**하여 **노하우 확보 지원** ('18년 6개 → '22년 50개)

- **(공급기업)** 클라우드 솔루션 등 **스마트공장 고도화**에 필수적이나 **해외 의존도**가 **큰 품목**을 중심으로, **상용화 R&D** 지원 ('18, 50억원)

* 품목지정 :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4차 산업혁명(예 : 센서, 유연생산 장비) 제품·기술 분야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지원 (기술혁신개발 및 창업성장 R&D 활용)

- **(인력) 교육·훈련용 스마트공장**(Learning Factory, 중소기업연수원)을 중심으로 **ICT융합 운영기술 역량**을 보유한 **현장인력 양성**(~'22, 5만명)

○ **(구축 유도)** 기업의 **자발적 스마트공장 구축** 및 **민간역량** (대기업) **활용** 등을 위해 **각종 인센티브 마련**

- **(우대) '스마트공장 인증' 제도**를 **도입** ('18)하고,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참여시 각종 **인센티브 부여** ('19)

* 스마트공장 선정평가에 금융기관·투자자·해외마케팅 민간전문가 등 참여

- **(대기업 활용)** 밸류체인 전반의 스마트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**대-중기 간 스마트공장 구축을 대기업과 공동 추진**

*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, 산학연 R&D, 중소기업 전담연구소 지정제도 활용(생기연 등)

□ R&D 운영에서 자율과 책임 강화

○ 평가기간 단축('17, 5개월 → '18, 3개월), 신청서류 간소화*, 정산부담 경감** 등 R&D에 전념할 수 있는 **수요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**

* 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로 분리되어 있는 신청서류를 통합하고 전체 작성분량을 축소(전체 20페이지→10페이지)

** 소액 연구과제(직접비의 5% 이내 또는 1,000만원 이하) 추진비 정산 의무 면제 등

○ 연구비 부정사용 공익신고 시스템 운영, 악의적 부정사용 기업 명단 공개, 부정사용 기업 패널티 강화* 등 **부정사용 엄정대응**

* 참여제한 기간(5년→10년) 및 참여제한 사업 확대(중기부 R&D → 중기부 全사업)

**⇒ 중소기업 R&D 혁신방안('18.상),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방안 마련('18.상)**

## 정책금융 : 성장촉진 및 금융안전망 강화

< '18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(100.8조원)>

| 구 분 | | '16년 | '17년 | '18년 |
|---|---|---|---|---|
| 정책자금 | 중진기금 | 3.5조원 | 3.6조원 | 3.7조원 |
| | 소진기금 | 1.6조원 | 1.6조원 | 1.6조원 |
| 신용보증 | 신·기보 | 60.5조원 | 63.8조원 | 65.5조원 |
| | 지역신보 | 9.3조원 | 9.8조원 | 10.0조원 |
| 매출채권보험 | | 17조원 | 18조원 | 20조원 |
| 합 계 | | 91.9조원 | 96.8조원 | 100.8조원 |

* 전체 중소기업 금융(651.7조원, '17.12월 기준)의 15.5%

□ 혁신성장 지원 자금의 대폭 확대 (5,460억원 증액)

○ **창업기원지원자금 규모**를 **대폭 확대**('17. 16,500 → '18. 18,660억원)하고, **유망 창업기업 연계지원 자금** 별도 운용*

* TIPS사업,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,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기업 연계 지원(1,000억원)

○ 신재생에너지 등 **신기술·신산업 영위기업** 및 **스마트공장 추진기업**을 위한 **전용자금 신설** (3,300억원, 「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」)

* 대출한도 확대 (45→70억원), 금리 우대(기준금리 적용) 등

## □ 정책자금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

○ **영세기업**의 시기별 **상환부담 조정**을 위해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**「기업자율 상환제도」 신설**

*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액대출(5천만원 미만)에 대해 시범 적용

○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**불편함 없이 원금을 조기에 상환**할 수 있도록 **불이익 부과('조기상환 페널티') 폐지**

*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달리, 조기상환 시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 (예 : 대출만기가 1년 이상 남은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 → 6개월 참여 제한)

## □ 금융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

○ **(경영애로·재해)**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 피해기업 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**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대출 기간 확대**(3년 → 5년 이내)

- **재해 피해기업 신속 지원**을 위해 **평가항목을 대폭 간소화**한 **'패스트 트랙 평가모형' 개발·적용**

* 기존 대비 50%이하 감소 : (소항목) 28개 → 14개, (조사항목) 111개 → 47개

○ **(FTA) 무역조정지원기업***에 대한 **사업전환자금 금리 인하,** 한·중 FTA취약업종(섬유 및 전자부품 등)에 대한 **시설자금 융자범위 확대**

*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
** (현행) 기계시설 → (개선) 건축 및 사업장 확보(시운전 포함)

○ **(매출채권보험)** 사고율을 2.8%* 내외로 관리

* 저신용 기업(15등급 중 10~13등급)의 보험 가입에 따른 사고 증가 폭을 축소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, 조기경보 시스템 운용

## 공공구매 : 혁신제품 시장 진입의 마중물 역할 수행

※ 공공구매 전체 시장은 '17년 기준 118.4조원, 이중 **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** (목표)는 **86.2조원**으로 **72.8% 수준**

### □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

○ 기술개발제품 시장 확대*, 성능인증제도 개선 등 **혁신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**를 위한 **제도 개선방안 마련** ('18.상)

* (기존) 물품만 혁신기업제품으로 인정 → (개선) 용역, 공사도 혁신기업제품으로 인정

○ 창업기업의 원활한 공공구매시장 진입을 위해 **창업기업제품**에 대한 **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신설** (창업지원법, 국정과제)

* ('18.상) 제도도입 관련 연구용역 → ('18.하) 창업지원법 개정 → ('19~) 제도 운영

○ 제도의 법적 근거 보완* 및 품질 개선방안** 마련 등을 통해 소기업이 생산하는 **공동사업 제품의 구매 확대 유도** ('18.하)

* (기존) 판로법과 지방계약법에 근거 명시 → (개선) 국가계약법에도 근거 규정 신설
** 공동사업 제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이 낮은 경우 개선을 권고할 계획

### □ 공정경쟁 기반 마련

○ 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한 중기간 경쟁제품 졸업제 실시 등 **공공구매시장 독과점 해소**를 위한 **세부 추진방안 마련·시행** ('18.하)

* '15년 기준 경쟁제품 시장 독과점 발생 제품 (공정거래법 적용) : 24개
** 중기간 경쟁제품 졸업제에 대한 근거규정은 기마련 (고시개정, '17.9월)

○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**입찰 참여 중소기업 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 작업* 추진**

* 참여기업의 대기업 지배 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시스템 구축('18.하)

○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**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**에 대해 **특별실태조사**를 **실시**하고 **공공기관 평가에 반영***

* (현행) 중기제품 구매 실적에 따른 가점 → (개선) 의무구매 미달성시 감점 추가

## □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

○ 사회적 약자로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* 중 **규모가 영세**한 경우에는 **소기업 제한경쟁입찰 참여 허용**

* 중증장애인생산시설, 사회복지법인 등

○ 임금체불·최저임금 위반 등 **사회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**에 대해 **공공구매 입찰 참여시 페널티* 부과** ('18.하)

*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계약심사시, 신인도 감점 부과

# 마케팅 :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유통망 진출 촉진

## □ 공적 기능 강화 등 유통망 전면적 혁신

○ (**정책매장**) '**행복한백화점**'의 브랜드 정체성을 백화점에서 '아이디어 **생활용품 전문매장**'으로 전환하여 명칭*과 매장 개편** ('18.상)

* 예시) "행복한마켓", "아임스타즈 하우스", "B+프리미엄샵(전문점)" 등

** 이랜드 '모던하우스' 모델을 벤치마킹 : 친환경, 건강, 휴식 등 고객의 생활과 연계된 인테리어 컨셉을 통해 고객이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매장구성

- '**전용 판매장**'은 면세점 및 유통망내 **판매위주**로 운영('18. 13개)하고,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에 특화된 '**플래그쉽*** 매장' 추진 ('18.하)

*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우수 혁신제품을 '선택·집중형'으로 입점 및 마케팅

** 국내외 바이어·고객을 대상으로 "전시 + 체험 + 홍보 + 판매"를 동시에 서비스

○ **(TV홈쇼핑)** 중소기업 **판로지원 공익실현**을 위해 설립한 **공영홈쇼핑 및 홈앤쇼핑**에 대한 혁신추진

- 공영홈쇼핑은 **중기제품과 농식품**을 고르게 판매하고, 창업 및 혁신기업의 **창의혁신제품 방송편성** 등 공적기능 강화 ('18.상)

- 홈앤쇼핑의 **판로지원 설립취지**를 실현하고, 민간홈쇼핑과의 협력을 통해 **창업·혁신기업의 초기제품** 방송 판매, 홍보 지원

□ **공적-민간 유통채널 간 상생협력 활성화**

○ 시장검증 우수제품을 중심으로 민간 유통망 입점, 아이디어 혁신제품 **기획홍보** ('18. 400개 제품) 및 **간접광고** 노출 ('18. 140개 제품)

○ 우수 혁신제품 정보(아임스타즈, 11천개 제품)를 민간 유통망에 제공

- 대형 유통망과 '**온라인 기획전** (170회)' 및 '**오프라인 특별전** (20회)' 개최하여 판매성과 제고 ('17. 75억원 → '18. 100억원)

○ 주요 온라인쇼핑몰(例 : 이베이, SK)과 업무협약 (MOU)을 통해 혁신기업 **초기제품의 인터넷** (모바일) **시장진출** 촉진 ('18. 상)

□ **유통환경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지원 강화**

○ 대한민국과 혁신 중소기업제품 이미지를 결합한 **「中企대표 공동브랜드」** 개발·육성 ('18. 하)

*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中企 제품군을 선정하고, 부문별 대표 기업 (年 30개 제품 내외)을 발굴 →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전략 수립, 국내외 마케팅 지원

## 수 출 : 글로벌 경제영역 확대를 적극 추진

### □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및 애로·규제 해소체계 마련

○ **(쇼핑몰 육성) 자체운영 쇼핑몰, 국내 업종별 전문몰** 등을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**주요채널로 육성**

| 기 존 | 개 편 |
|---|---|
| 아마존,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중심 | 국내 쇼핑몰 육성 및 중소기업 직접 판매역량 강화 중심 |

- **(현지화 쇼핑몰)** 기존 사업에서 해외수요가 검증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, **현지화된 쇼핑몰***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지원

  * 현지어 쇼핑몰 구축 뿐 아니라 결제, 배송, 교환·반품, 고객응대까지 현지 쇼핑몰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

- **(전문 쇼핑몰)**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패션, 화장품 분야 전문 쇼핑몰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

-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및 전문몰과 구직인력 간 매칭을 지원하고, **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SNS 및 옴니채널 마케팅 강화**

○ **(애로·규제 해소)** 온라인수출 관련 **애로사항* 전담 접수창구를 신설**하고, **민·관협의체 운영**을 통한 **문제 해결 추진**

  * 애로 예시: 해외오픈마켓이나 독립몰의 경우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마련이 불가능하여 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서비스 활용 불가

- **전문상담인력을 배치**하여 단순 문의는 즉시 답변토록 하고,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를 매칭하여 해결

- 규제, 정책관련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'중소기업 온라인수출 민·관 협의체' 구성·운영

  *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 주재하에 월 1회 개최. 안건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참석

## □ 수출 중소기업 저변확대 및 선도기업 육성 Two-track 접근

< 중소기업 수출 지원 체계 >

| 수출저변 확대 | 수출 선도기업 육성 |
|---|---|
| ▪수출기업 DB화, 성공사례 분석·공유<br>▪수출 애로 상시 발굴·해소 | ▪수출 상위 1,000개 기업 집중 관리<br>▪수출 선도기업 육성 패스트트랙 운영 |

○ **(수출저변 확대) 수출기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속관리**

- 데이터 기반 정책 집행을 위해 **수출기업 현황, 수출 활동** 및 **지원이력** 등을 **DB화*** → **성공사례 분석·공유**** 및 **정책 개발**

* 수출중소기업 9.2만개사, '17년 참여기업 중 수출실패 기업 3,500개사, '18년 신청 기업중 내수기업 4,500개사 등 연내 10만개사 DB화

** 업종, 규모, 제품, 시장, 진출단계, 진출 전략 등 특성별 성공사례 및 노하우 분석 결과를 보도자료 및 기획기사 등을 통해 알리고 책자 발간·보급

- **온라인 상담채널**을 구축*하여 **수출애로 상시 발굴·해소** 지원

*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수출애로 등재 코너*를 신설하고 수출정책 뉴스레터 발송 및 이메일 애로접수 병행

○ **(수출선도기업)** 수출 상위 기업 집중 관리 및 육성 체계 구축

- **수출상위 1,000개 기업**을 **직접 방문·상담**하여 애로발굴, 해소 지원 (필요시 관계부처 협의) 및 제도개선 추진

* 해외국 25명, 수출지원센터 75명(지방청 50, 중진공 25) 등 전직원이 20개사씩 방문하고 고위직과 상시적인 핫라인 유지

- 성장성이 입증된 기업은 **수출사업간 연계 등 집중지원**을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**패스트 트랙*** 신설

* 혁신 내수·창업기업 → 수출기업화 → 수출고도화 → 고성장기업 → 글로벌강소기업 등 역량별 지원사업 연계 강화

## □ 신흥시장 진출 및 협력 강화

◇ **ASEAN·인도**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**정부의 신남방 정책 선도**

* 아세안 시장은 세계 3위권 인구규모(6.2억명)와 4~5%대 경제성장으로 소비여력이 크고 한류열풍이 높아 우리기업의 수출시장으로 급부상

### ○ 아시아하이웨이 사업 추진

- 중국진출 전용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**아시아하이웨이**로 **확대·개편**하여 **ASEAN**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

* (기존) 차이나하이웨이(150억원, 중국 300개사) →
(변경) 아시아하이웨이(150억원, 중국 150개사, ASEAN 150개사)

### ○ 한류연계, SNS 마케팅, 시장개척단 파견 등 아시아 집중

- 대기업 주관 **글로벌 한류문화 공연*** 및 **한류콘텐츠****를 **활용**한 중소기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('17. 6회 → '18. 10회)

* CJ E&M와 KCON, SM 타운 등 개최시 중기제품 전시·판촉 및 수출상담회 개최
** SBS 등의 방송콘텐츠 내 PPL 제작등으로 해외 배포 시 중기제품 간접광고 진행

- 신흥시장 중심으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향력이 있는 **인플루언서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마케팅** 지원(100개사)

*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, 페이스북 등 SNS에 홍보물 등록 및 검색엔진마케팅, SNS 내 CPC(Cost per Click)광고 게재 등

- 해외단체전시회,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선정 시 인도, ASEAN 등 **아시아 시장에 가점을 부여**하여 비중 점진적 확대*

* 전시회 : ('17) 16.2% → ('18) 16.9% / 시개단·수출컨소시엄 : ('17) 50% → ('18) 55%

### ○ 신남방 정책과 연계한 국제협력 추진

- 아세안, 인도 신남방 정책 대상국가와 정부간 협력(G2G)을 강화하고 기술교류센터 설치*, 상담회 개최 등 기술교류 활성화

* (기존) 이란, 베트남 → (확대)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,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 중심

□ **수요자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기능 강화**

○ 중소기업 역량·수요에 맞는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**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**

-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**상시 역량 진단** 실시 (단순 평가 지양)

- **진단결과를 기업과 공유**하여 자체 역량 인식·제고 기회로 활용

- 역량·수요에 맞는 **수출서비스, 외부기관 및 수출사업 활용 방안** 안내 및 연계 지원하고,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

○ **수출지원센터를 고객감동 서비스 센터로 개편, 현장 밀착지원 강화**

- **(원스톱 상담)**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, 기업의 수출실적·역량·지원 현황·과거 상담내역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담 및 애로 해소

  · 중기부 이외 수출 유관기관 제공 서비스*도 상세 활용방법 안내 및 연계 지원 (필요시 서비스 대행)

  * 중진공(자금), KOTRA(바이어정보), 무역협회(바이어매칭), 무역보험공사(수출보험) 등

- **(수시 지원)** 상시 **역량 진단 점수로 평가를 대체**, 일정 수준 이상* 역량 보유 업체는 예산 소진시까지 **수시 지원** 실시

  * 직전 공고시 선정기업 cut-line 점수의 110~120 % 수준에서 설정

- **(찾아가는 지원)** 센터 전문인력이 지역내 **혁신·창업기업 육성기관*을 찾아가서** 유망기업 발굴 및 수출지원서비스(상담·진단·수시지원) 제공

  * 창조경제혁신센터, TIPS타운, 창업사관학교, TP, BI, 판교 1·2 테크노밸리 등

○ 중소기업이 필요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**수출 바우처 참여기관** 및 지원 확대

  * (기존) 중기부, 산업부 → (추가) 농림부(46억원), 해수부(4억원), 특허청(10억원)

## ②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

### □ 기업규모 등에 따른 불평등 규제개선

○ **(개선 과제)**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**불평등·불합리한 규제**를 발굴하여 중점 개선

○ **(개선 절차)** 관련업계,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후, **민관합동 규제개선 TF**를 **구성**하여 협의 진행

- 개선결과는 **규제현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발표**하고 홍보 실시

### □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각종 행정조사 부담 완화

○ 개별 추진되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**공동조사**가 **가능한 사항** 발굴 추진 ('18.상)

※ (참 고) 519개 중소·중견기업 설문조사 결과

- 행정조사 부담(연간) : 451페이지 서류준비, 120일 / 905만원 소요
- 행정조사 문제점 : △과도·중복 서류제출 △중복 행정조사 △과도한 조사 주기 등
-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효과(예상) : 매출 1.1% 증가

- 이를 위해 지방청,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**행정조사 부담이 큰 분야**(위생, 소방, 환경 등)에 대한 **실태조사를 실시**

○ **공동조사에 참여**하여 계도 위주의 조사, 자율 점검 방식의 조사 등 **부담완화방안 마련**하여 국조실과 협의하여 개선 추진('18.상)

- 특정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확대 방안 등을 검토

□ 신규 규제 발굴·개선

○ **(규제발굴)** 소상공인 등 **규제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**하여 관련 **현장기관과 협력**을 통해 규제발굴 추진

- 본부, 지방청 및 유관기관 등의 **모든 역량을 투입**하여 규제를 집중 발굴

**《분야별 규제발굴 체제》**

| 추진 시기 | 분야 | 주관부서 | 현장 유관기관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지방청 | 유관기관 |
| 1/4분기 | 소상공인 | 소상공인정책과 | 공공판로지원과 | 소상공인지원센터 |
| 2/4분기 | 벤처·창업 | 창업정책총괄과<br>벤처혁신정책과 | 창업성장지원과 | 창조경제혁신센터,<br>창업보육센터 등 |
| | R&D·신기술 | 기술혁신정책과 | 기업환경개선과 | 기술정보진흥원 |
| 3/4분기 | 판로·금융 | 판로정책과 | 공공판로지원과 | 중진공, 기보 |
| | 수출 | 해외시장총괄과 | 수출지원센터 | KOTRA |
| | 지역산업 | 지역혁신정책과 | - | TP, 지역특구 |
| 전분야 | | 옴부즈만 | 지자체 | 중기중앙회 |

○ **(규제개선)** 발굴규제를 **분야별*로 분류**하여 업계, 이해관계자 등의 **다양한 의견 수렴**과 **관련 전문가의 자문**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

* 산업별(O2O, 드론 등), 업종별(이·미용업, 음식업 등), 분야별(판로, 인력, 입지 등)

- 마련된 개선안에 대하여 국조실 등 관련부처, 업계, 전문가 등 **민관합동 규제개선 논의**를 통해 일괄 개선 추진

□ 규제영향평가제도 실효성 확보

○ '18년부터 **모든 신설·강화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실시**하도록 개선

* (현행) 중요규제 영향평가(年 380여건) → (개선) 모든 규제 영향평가(年 1,000여건)

- 규제 차등 적용 매뉴얼 보급('18.상) 등 **부처 규제 담당자** 및 **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센터**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제도정착 유도

## □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하여 정책진입 장벽을 제거

○ 중기부 정책에 **처음 참여하는 기업**만을 위한 **프로그램**을 **신설**하여, 정책 진입장벽을 완화

○ '18년 일부사업에 **시범 운영 후, 성과에 따라** 단계적으로 **확대**

**<정책 첫걸음 프로그램 도입 분야 예시>**
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|---|
| 자금 | ▪ **정책자금 예산의 60%**(22,410 / 37,350억원)를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배정·지원<br>* 첫걸음기업 상담 시 1:1 담당관 지정, 대출 승인기업에 대한 멘토링 제공 등 밀착 지원프로그램을 별도 운용 |
| R&D | ▪ R&D 사업별로 **첫걸음 기업 지원 목표**를 설정하는 **'첫걸음 기업 목표관리제'** 도입<br>* 저변확대사업(창업성장, 산학연, 제품서비스 등)은 50% 이상<br>전략형 사업(기술혁신개발사업, 구매조건부 사업 등)은 30% 이상 |
| 지역 | ▪ 첫걸음 기업을 위한 전용 예산 할당 및 가점 부여 등 우대<br>*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(비R&D, '18, 798억원) 30% 할당,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(R&D, '18, 1,105억원) 가점 5점 부여 등 |
| 공공 구매 | ▪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 면제 등 공공구매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**첫걸음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** 마련 및 시행('18.상) |
| 전통 시장 | ▪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하여 상권육성 전문가를 파견, **특성화 추진 기초역량 배양 지원**('18, 30곳 지원)<br>* 상권육성 전문가(2인)을 시장에 파견, 시장별 특색발굴, 카드결제시스템 도입, POP(가격·원산지 표시 등), A/S콜센터 구축 교환·환불 대응 등 특화사업 기반마련 |

## ③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 효율화

□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 정보 확대

○ **(관리 대상)** 정부 지원사업 선정기업 외에 **신청기업**까지 확대

○ **(관리 정보) 국세청**의 **기업 과세정보***, 최저임금 위반기업 및 고용보험 정보(고용부 협업), 통계청 보유 **정보 등 추가 확보**

* (기존) 매출액, 창·휴·폐업일 → (추가) 상시근로자(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), 자본금, 영업이익, 자산총액, 부채총액 등 (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)

□ 중소기업 정책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 구조 개편

○ 중기부 지원사업에 대한 **성과평가를 실시하고 '19년 예산편성과 연계**함으로써 **재정효율화를 달성하고 성과 위주**로 사업개편

○ **(사업평가)** 성과평가 대상사업 결정, 사업군 분류 및 평가지표 개발·적용, 평가등급 구분 및 **예산반영 기준마련**

* 제외사업(예시) : 시행 1년 미만, 종료예정 사업, 인건비·운영비 사업, 5억원 미만 사업 등

* 사업군 분류(예시) : 자금, R&D, 인력, 창업·벤처, 소상공인, 내수, 수출 등

○ **(예산조정)** 다각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기초로 내·외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**'19년도 중기부 사업 구조 개편안 마련**

- **①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, ② 만족도조사 결과, ③ 실국별 자체 분석 결과** 및 **④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결과**를 **종합 평가**

* 기재부 사업평가 결과, 국회·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및 타부처 협업사업 등도 검토

*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은 실국 및 중기연구원의 협업하에 진행하고 결과 도출

<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절차(안) >

**평가대상 및 지표 확정 (1월)** → **사업평가 및 예산안 마련(3월)** → **예산안 조정 (5월 중순)** → **기재부 결과 통보(5월말)**

## □ 유사·중복사업 조정 등 중소기업 정책 총괄·조정 기능 강화

○ 중소기업 관련 **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**하기 위해 **"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" 설치** (중소기업기본법 개정)

- (구성) 중기부장관(위원장), 관계부처 차관급·전문가(위원) 등 30인 이내

* 관계부처 : 기재부·산업부·공정위·금융위 등 경제 관련 주요부처

*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: 안건의 사전 협의·조정 및 상정여부 판단, 안건 발굴 및 해당 분과별 전문적인 안건검토 등 심의조정회의 상정 지원

- (기능) 중소기업 육성계획 및 정책현안, 유사·중복사업 조정,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 심의·조정

* 실무조정회의 : 안건 발굴, 안건의 사전 협의·조정 등

* 전문위원회 : 분야별 안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 (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)

○ 부처 및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**신설 또는 변경**시 **중기부와 사전협의 의무화** (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추진)

- 주요 정책과의 방향·취지와 비교하여 신설·변경의 타당성 검토 및 기존사업과의 **유사·중복성 등 심사**

< 신설·변경사업 사전협의제도 운영 절차(안) >

| 신설·변경 사전협의 계획, 지침 통보(3월) | → | 사전협의 요청 (~4.30까지) | → | 전문가 검토 및 심의 (~6월) | → | 요청기관, 기재부 및 행안부 통보*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중기부 → 부처, 지자체 | | 부처, 지자체 → 중기부 | | 중기부 | | 중기부 → 기관 |

## 전략 4 더불어 잘사는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

◈ **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, 기업 간 및 지역 간 상생혁신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기업 생태계 조성**

**① (공정경제)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근절**

**② (대-중기간 상생) 성과를 공유하는 실질적 상생혁신 확산**

**③ (중-중기간 상생) 협업을 통한 혁신역량을 보완·발전**

**④ (중앙-지역 간 균형)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 견인**

### ① (공정경제)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근절

□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추진

○ **(기술임치 활성화) 창업·벤처기업** 등에 대한 **임치비용 완화**를 추진하고, **표준 하도급계약서**의 **기술임치 적용업종 확대**(현재 13개 업종)

○ **(분쟁조정제도 강화)** 기술탈취 침해 신고에 대한 **사실조사, 시정권고, 공표 등 행정조치 도입**(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)

○ **(공익법무단 도입)**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상시적 법률 자문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변협과 협조 강화

-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**고문변호사 등을 매칭하고 선임비용 지원**

* 계약서 체결 시 계약서를 검토하고 부당한 자료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등

**⇒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 ('18. 2월)**

□ 수·위탁 분쟁조정 시 행정제재 적극 활용

○ **(사전조정)** 사전적으로 **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**의 **사전분쟁조정절차**를 거치도록 하여 자율적 분쟁조정 유도

- 조정 **불성립 사안** 중 **중요사안***은 **중기부**로 **조정 신청**을 권유

* 불공정행위의 유형, 수탁기업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가 판단

○ **(적극제재)** 중기부가 **직접 조사**하여, **시정명령 및** 공표 등 **행정제재**를 **부과하여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**

* (시정명령 사례) '07.1.23 및 '11.12.27 어음할인료, 지연이자를 수탁기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함
*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시정명령의 형태 및 기준 마련

## □ 납품단가 제값받기 유도

○ 기업 또는 업종별로 **납품단가 결정 표준절차를 정립**하여 **운용**하도록 권장하고, 해당 실적을 **동반성장지수평가에 반영**

○ 현재 연 1회만 실시 중인 **수·위탁실태조사**를 **수시로 실시***

* 예시 : ('18.상) 유통분야 3개 대형유통업체 PB상품 부당 대금결정 행위 등 조사
('18.하) 자동차, 전기·전자, 섬유·의류, 조선, 금속·비금속 중 1개 선정

○ **'수·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제도'**의 **인센티브**를 **확대***하고, **수요예보제**** 운영 등 **납품 관행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확산** 유도

*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,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
** KT 사례 : 유무선 단말/장비(129개 품목)에 대하여 매월/격월로 4개월간 수요계획 정보를 협력사에 공유하는 SCM협의체 운영

## □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추진

○ '22년까지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**로드맵 마련** ('18.1)

○ 약속어음 폐지에 대비하여 **'구매자보험***'(위험분담) 및 **'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**'(대체결제수단) 도입 추진 (중진법 개정, '18.상)

* 부도위험의 원인제공자인 구매자가 자기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
** 판매기업이 자재 구매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약속어음을 보험에 가입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

## □ 불공정거래 예방·감시 활동 및 조사기반 강화

○ **불공정거래신고센터**간 **정보공유 기능**을 **강화**하고, 변호사 **재능기부(pro bono)** 등 **전문 상담인력 운영***

* 지방변호사회와 지방청간 MOU 체결 및 시범운영 후 전국 확산 추진

○ 상생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**구체적인 내용과 예시** 등이 포함된 **수·위탁거래공정화지침***을 **제정**하고, **조사요원 교육 강화****

* (주요 내용) 부당 대금결정·감액, 부당 발주중단 등 상생법 위반행위 별로 그 판단 기준 제시, 위반행위 별로 대표적인 사례 예시
** 불공정거래·수위탁 담당자(본부, 지방청 23명)에 대한 공정위 위탁교육 실시

## ② (대-중기간 상생) 성과 공유 확산을 통한 실질적 상생 확산

### □ 공정한 성과배분 촉진

○ **(협력이익공유제)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**을 **마련**('18.2) 하고, **상생법 개정**을 통한 **법제화 추진** ('18.3~6)

- 입법단계 전 국회·학자 등 의견선도자 및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**전략적 집중홍보 실시**('18.1~)

- **공유유형*** 및 **공유금액 규모**에 따라 **인센티브를 차등화****하여 **대기업**의 **자발적 제도 도입 유도**(기재부 협조)

* 협력이익 목표설정, 관리난이도 등에 따라 ①판매성과할당제, ②판매성과변동제, ③원가가산 균등제, ④원가가산 변동제 등 유형으로 구분

** 차등화 예시 : 공유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조세감면 (법인세 - (협력이익공유액 × 가중치 × 20%))

○ **(성과공유제 확산)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***을 **확대**하고, **지방공기업**의 **신규참여를 유도****(상생법 개정, '18.3~)

* (평가대상) '16년 155개 → '17년 185개 → '18년 200개 → '19년 500개

** 지방공기업(146개) 경영평가지표에 성과공유제 시행 관련 사항 반영

- 기업들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**성과공유 확인제도를 대폭 간소화**하고, 다자간 성과공유제 참여절차 개선 및 과제 발굴 확대

* 과제등록 절차를 재정립·간소화하고 과제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표준화된 신청양식을 제공

### □ 상생협력을 2·3차 협력사로 확산

○ **(상생결제 활성화)** 상생결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 1차 기업의 상생결제 참여 (1차 → 2·3차)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

- 동반성장 지수 **상생결제 가점**을 **확대** (0.5점 → 최대 1점)하고, 상생결제 **세액공제율 확대**(0.1%~0.2% → 0.3%~0.6%, 조특법 개정) 추진

-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 **상생결제 지급 의무화**

⇒ 향후 5년간 **상생결제 누적액 730조원 달성** ('17, 175조원) 목표

| 구분(단위 : 조원)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상생결제액<br>(누계) | 101<br>(276) | 106<br>(382) | 111<br>(493) | 116<br>(609) | 121<br>(730) |

○ **(대기업 참여 촉진)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**을 자발적으로 **미거래 중소기업**에게 **개방**할 수 있도록 **유인체계*** **마련**

*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(0.5점 가점)뿐 아니라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도 가점을 부여, 中企 호응도가 높은 최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포상·기획기사를 통해 홍보 등

-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**사례를 적극 발굴하고,** 상호 적용 가능한 모델을 공유할 수 있도록 **온라인 플랫폼*에 공개**

* 동반성장통합 플랫폼(www.winwinvalley.or.kr) 확대 개편

○ **(중견기업 참여 촉진) 「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*」를 신설**하고,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**윤리강령 마련**

* 매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, 불공정 거래관계 등에 대해 실태조사 후 우수기업 10개사 사례 발표

## □ 구매조건부 등 민·관 공동R&D 투자 확대

○ 정부, 대·중견기업,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R&D 지원 자금을 조성하는 **'민·관 공동기술투자금'** 규모 확대 ('17, 6,286→'18, 6,500억원)

○ 대·중견기업·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민·관 공동투자R&D 과제 발굴·지원 확대

* ('17) 824개 과제, 3,985억원 → ('18) 950개 과제, 4,200억원

## □ 대·중소기업간 사업영역 조정 강화

○ **(적합업종)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**의 **조속한 법제화 및 안착**을 유도하고, 現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

- **(제도 정립)「생계형 적합업종** (정부)→ **상생형 적합업종** (동반위) → **상생협약** (동반위)」으로 제도 운영체계 정립

* 보호강도 및 업종 성장단계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여 업계의 연착륙 및 보호해제의 충격 완화
** 생계형의 세부 운영기준, 적합업종 제도간 운영체계 등「적합업종 전반의 운영방안」마련

- **(경쟁력 제고)** 업종 특성·시장여건,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업종 성장 단계별 **맞춤형「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」** 수립 추진

* 업종별 실태·시장분석→ 경쟁력 강화사업 기획, 단계별 경쟁력 로드맵 마련
공동·협동화 사업→ 업종공통 R&D·사업화→ 대·중소 상생사업 모델→ 新시장 개척 등 (우선지원)

- **(現적합업종 제도) 동반위의 신속한 합의도출**(1년內) 등을 위해 대기업등에 대한 **'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'**을 신설

·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**권고기간 확대** (現 3+3년→**5+3년**)

**⇒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수립 (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前)**

○ **(중소기업 상권 보호) 사업조정제도**의 **실효성**을 **강화**하고, 상생기금 실태조사 및 대기업의 신규 상권 진출을 **수시 모니터링·대응**

- **피해 소상공인**의 **사업조정 신청 가능***하도록 하고, **권고범위를 판매·마케팅까지 확대**(상생법 개정, '18년 상반기)

* 중소기업단체만 신청 원칙, 단체가 없거나 대표성 부족시 1/3이상 동의로 가능
** (현행) 품목·수량·시설의 축소 권고→**(개선)** 품목·수량·시설+판매·마케팅 제한

- **상생기금 실태조사*** **및 상생기금 수수 금지에 관한 상생법 개정****** 추진

* 대형마트 및 아울렛 등 104건 조사(지방청, 지자체, 중앙회 합동조사, '18.2) 후 횡령·배임등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

** 사업조정시 금품 등 요구 및 수수 금지(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.5억원 미만 벌금)하는 상생법 개정안 상임위 소위 계류 중(김종민 의원,'16.12)

- 급성장 중인 신규업태에 대해 **대기업의 신규진출 여부 상시 모니터링** 가동 → 골목상권 사전 보호

* 골목상권 특별대응팀(팀장: 소상공인정책실장) 및 현장대응팀(팀장: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)으로 구성·운영

## ③ (중-중기간 상생) 협업을 통한 혁신 역량을 보완 · 발전

□ **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**

○ **(제도 확충) 상호 신뢰**할 수 있는 협업 환경 조성을 위해 **「(가칭) 중소기업 네트워크법」** 제정 ('18.상) 및 **협업전문회사 제도*** **도입**

* 협업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수준의 우대 지원

○ **(거버넌스)** 협업 전담기관 지정 및 민관합동 협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 **민관 협업화 촉진 거버넌스 체계** 정립

○ **(매칭 시스템)** 협업 기업 발굴·매칭을 위한 온·오프라인 **협업지원 플랫폼을 구축**하고, **'협업 코디네이터' 양성** 추진 ('18, 100명)

□ **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신설하여 활성화 유도**

○ 기획·R&D 성과물 대상 **「협업기획·매칭→ 사업·시장성 기반 R&BD→ 시제품·판로」**의 **C&BD 프로그램(신설)** 추진

- '22년까지 **1천개 협업 프로젝트**를 **발굴·지원**하여 성공사례 도출

* 네트워크형 R&D, 기술전문기업 협력 R&D 등 개편→ C&BD로 단계적 전환

○ 지역 **협업 선도기업 500개**를 육성 ('18~'22)하고, TP·산단 등 **기업 집적지**를 통해 선도기업과의 **협업 프로젝트** 추진

- '22년까지 **1,200개 기업 집적지**를 협업·혁신성장 거점화

* 지역 교류협의회 내실화, 지역 협업선도기업 선정, 산단 등 협업 시범프로젝트, 소공인 시제품제작센터 등

○ **선도형 협동조합 100개**를 육성 ('18~'22)하고 협동조합 기반 **「업종 공통R&D → 공동구매·생산 →공동마케팅」** 고도화

* 조합내실화·사업조합 촉진, 업종공통R&D, 협동조합 공동구매센터 등

**⇒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대책 마련 ('18.상)**

## ④ (중앙-지역 간)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 견인

### □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지역 혁신 기반 제공

< 지방 혁신 거점 >

| 지역혁신성장 특구 (규제샌드박스) | 혁신도시 클러스터화 |
|---|---|
| ▪시·도지사 신청<br>→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 지정<br>▪규제확인, 임시허가,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등 적용 | ▪산업기술단지 조성 ('19)<br>▪산학연 연계 맞춤 지원프로그램 |

○ **지역혁신성장 특구 (규제샌드박스) 지정 제도 마련** (지역특구법 개정 추진)

- **(지정)** 시·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**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** (국무총리 위원장)에서 지정

·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기술·신서비스 활용 산업 여부 등 고려

- **(특례) 규제확인, 임시허가** (2년+2년*), **실증을 위한 규제특례** 등

* 규제프리존법안의 4개 대체법안(ICT융합법, 산업융합법, 금융혁신지원법, 지역특구법)에 동일 적용

· **지역 신산업**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**기준이 없거나 불명확** 또는 **불합리한** 경우, **안전성 확보 시 임시허가 부여**

· **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신기술**에 대해 **지역·기간 등을 제한**하여 **기술검증 및 시장성 파악 등을 위한 실증 허용** 등

○ **혁신도시 클러스터화 추진**

- 혁신도시 입주기업 대상, **지역內 혁신 지원기관**(TP·대학 등) 등을 활용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를 **맞춤 지원하는 프로그램** 도입

## □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제도 개편

○ **(지정범위) 산단 → 중소기업밀집지역·행정구역**(읍면동) 포함

-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나 자연재해에 따른 중소기업의 직·간접 피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

○ **(지원내용) 세제지원대상 확대, 사업전환지원·소상공인융자 등 추가**

- **세제지원 대상**을 현행 **20만 미만 시군**에 위치한 특별지원지역에서 중기부가 지정한 **전체 특별지원지역**으로 확대(기재부 협의)

<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변화 모습 >

| 구분 | 현행 | 개선 |
|---|---|---|
| **지정범위** | ▪산업단지 | ▪중소기업 밀집지역, 행정구역(읍·면·동) 포함<br>*지원대상을 기업형태(소상공인·中企)·업종으로 한정 가능 |
| **지정기준** | ▪전국 산단 평균대비 입주율, 가동률 등 평가 | ▪재해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재산 손실<br>▪사회·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매출 축소 등 경제적 손실 |
| **지원기간** | ▪기본 5년(연장 가능) | ▪기본 2년 + 추가 3년(연단위 연장) |
| **지원내용** | ▪세제, 융자 등 우대 | ▪사업전환지원, 소상공인 자금 등 추가 |

## □ 지역 주력 산업 재편 및 집중 지원

※ 4차 산업혁명에도 불구하고 시도 주력산업 중 신산업 분야인 융복합 산업(제조+IOT, 제조+서비스 등)은 22%에 불과

○ 시·도 주력산업을 제조+ICT(7개→24개), 제조+서비스(7개→11개) 등 **융복합 산업으로 확대**하고, **63개 분야에서 → 48개로** 효율화

○ **시·도 주력산업**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**R&D·시제품제작·기술지도** 등을 통한 혁신역량 확충 중점 지원('18, 1,650억원)

○ 첨단센서(대전), 자율주행차(대구) 등 4차 산업 관련 신기술에 대해 **시제품제작·테스트베드 제공** 등 실증 지원('18, 65억원)

## □ 지역기업 성장 저변 확충

○ **지역 중소기업**에 대해 R&D 등 중소기업 전용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**비수도권 중소기업 균형성장지원제도**(예 : 평가가점 등) 도입

* 지역별 낙후 수준을 고려한 권역별로 차등 우대방안 강구

-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가 일정비율(예: 50%)을 펀드에 출자하고 **지방투자 의무 부여**(예: 펀드결성액의 10%)

○ 지역에 본사(사업장)을 둔 **기술력 있는** 중소기업 중 **우수기업*을 집중 지원****

* 매출 50~400억원 기업 중 매출성장·일자리창출 등이 우수한 기업

** 전담 PM매칭, 상용화R&D·사업화 패키지 지원, 기타 마케팅 등 중기부 사업 우대

○ **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**

- **지방중기청를 중심으로 스크럼을 구성하여** 지방중기청을 통해 분야별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**일관지원시스템 구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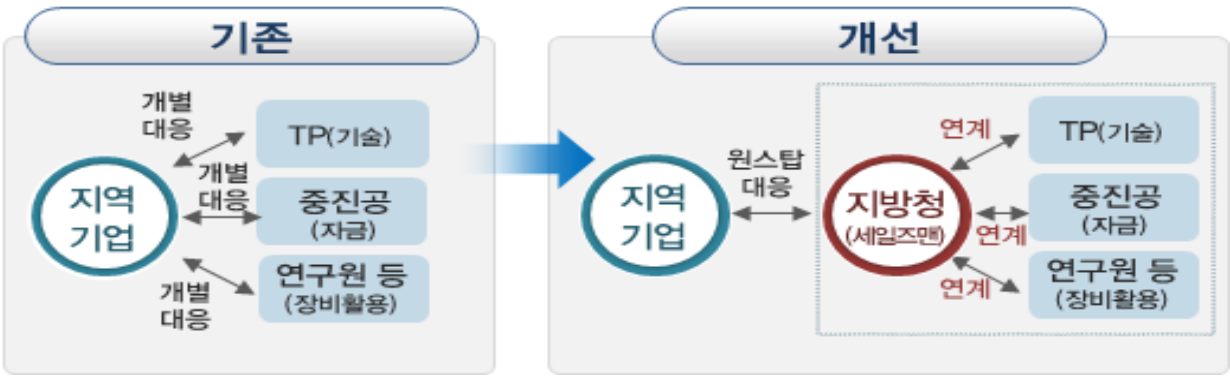


-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**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전략**을 마련('18.상)하고, 필요시 법령 제·개정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

## 전략 5 소상공인·전통시장 자생력 강화

◈ 삶의 터전이며 서민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여, 전반적인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

① (상권보호) 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

② (소상공인)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

③ (소공인) 우수 숙련기술 기반의 혁신형 소공인 육성

④ (전통시장) 고객이 감동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

### ① 골목상권지킴이 4종 정책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

□ 복합쇼핑몰·전문점 등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(유통법 개정)

○ 광범위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규제* 신설

* (의무휴업) 월 2회, (영업시간 제한) 0시~오전 10시

○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**운영실태 조사** 및 **지역상권영향분석**을 거쳐 분류기준 구체화 등 **합리적 규제방안 마련**

| 현 행 | 개 선 안 (예시) |
|---|---|
| 2. 전문점 :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·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**특정 품목에 특화한** 점포의 집단 | 2. 전문점 : ----------<br>----------**특정 품목 취급 면적 또는 품목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** ---- |

○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 방지를 위해 **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,* 작성주체 변경**** 등 **등록제도 실효성 제고**

* (현행) 전통시장, 슈퍼마켓 → (개선) 의류소매점, 음식점 등 추가

** (현행)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가 작성 → (개선) 제3의 전문기관

## □ 상가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(법무부 협업)

○ 전체 상가임대차의 **90% 이상**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法 적용범위인 **환산보증금 상향**

○ 상가임차인이 **임대료 과다인상, 일방적인 계약해지**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**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 조성**

-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·임대료 **인상률 상한**(現 9%)을 **인하**
- **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**을 現 5년에서 **10년**으로 연장
- 건물주가 **재건축·철거**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퇴거보상제 등 보호방안 마련

## □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개선 (금융위 협업)

○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**온라인 판매자로 확대**하여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('18.12)

*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결제대행사(PG社)가 가맹점 역할을 대신하여 우대수수료 미적용

**< 온·오프라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비교 >**

| 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 | |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영세가맹점(매출 3억 이하) | 0.8% | 약 3.5% 내외 | 카드 수수료 | 2.1~2.3% |
| | | | 호스팅 수수료 | 0.9% |
| 중소가맹점(매출 5억 이하) | 1.3% | | PG 수수료 | 0.2~0.4% |

○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**업종별 카드수수료 차등화**,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**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**('18.12)

## □ 온라인 포털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방지

○ 온라인 포털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('17.11) 결과 **포털에 의한 불공정 사례 확인*** → 합리적 규제 필요

* **불공정 사례** : 키워드 검색광고는 단순 검색횟수에 따라 광고료 발생하여 불합리, 상단 광고의 경우 입찰식 광고(베팅식 광고)로 인해 과도한 광고비 발생 등

○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O2O서비스 등 **온라인 포털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 마련**('18.5)

## □ 상권내몰림(젠트리피케이션)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○ 상권주체간 **상생협약**(임대료 인상 자제, 장기임대 보장 등)을 체결한 **일정 상권구역**을 지정·지원하기 위한 **「지역상권법*」** 제정

*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(現 5년)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(現 9%)에 관한 특례 적용, 상권구역 상생발전을 위한 보조·융자 지원 및 대규모점포·대형 프랜차이즈 등 영업 제한

○ 상권 특성에 따라 **상권활성화**가 필요한 구역(**"자율상권구역"**)과 **상생협력**이 필요한 구역(**"지역상생구역"**)을 나누어 지정

* 지역상생구역 : 임대료 상승 구역 대상 상생협력 기반 사후적 상권내몰림 방지
* 자율상권구역 : 쇠퇴한 지역 구도심 상권을 육성하고, 사전적 상권내몰림 방지

- 상생협력 활성화 및 **임차환경 개선**을 **지원**하고, **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 연장**(5년→최대 15년), **업종제한* 등 특례를 적용**

* 사행행위업, 단란주점 등, 일정매출 이상 가맹점, 대규모점포, 준대규모점포 등 (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하고 상인 등과 사전 협의한 경우 지자체 승인하에 영업 가능)

○ **전통시장 육성사업** 지원시 **상생협약 가이드라인*을 제정**하고('18.3), 전통시장내 상권주체간 **상생협약 의무화**

* 기준(안) : 2년간 임대료 동결 → 이후 3년간 2%이내 인상
*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(1월) →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타 사업으로 확대('18.하)

## □ 상점가 범위조정 등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

○ **상점가 기준을 2,000$m^2$에 50개 → 30개 이상 점포로 완화**
('18.1, 유통산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)

* 전국 상점가 현황('16년 기준) : 220곳, 5.2만개 점포
** 등록기준 조정시 6,573곳이 신규진입 가능 추정(소진공, 전국 400만개 사업체 분석결과)

○ **상점가 인정**을 위한 제도 도입을 **「유통산업법」에 마련**('18.상)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**전통시장과 동일하게 활성화 지원***

* 주차환경 개선, 시설현대화, 구역 특·장점 발굴 육성, 공동마케팅, 온누리상품권 등

##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

### 소상공인 창업 지원

□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하여 신사업 창업아이템 개발

○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 **'크라우드 펀딩' 시스템을 접목하여 민간 투자자를 통한 시장검증** 추진

○ 투자 유치액 순으로 경진대회 입상자를 선발하고, **입상자는 정책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** 지원

**< 크라우드 펀딩 유형 >**

| 종류 | 자금모집방식 | 보상방식 | 주요사례 |
|---|---|---|---|
| ① 후원형 | 후원금·기부금 납입 | 무상 또는 비금전 | 문화예술아이디어 상품 |
| ② 대출형 | 대출계약 | 유상(이자) | 자금 필요한 개인 사업자 |
| ③ 투자형 | 증권(주식·채권) 발행 | 유상(배당금, 이자 등) | 창업 초기기업 |

□ 「신사업 창업사관학교」에서 창업부터 성장까지 일괄 지원

○ 창업사관학교 입학규모를 축소(450→300명)하여 명실상부한 **신사업·유망업종 중심의 소수정예방식**으로 전환

* (**개편전**) 다수 선발하여 교육 단계별 축소 : 이론교육(450명) → 점포체험교육(360명)→ 사업화지원 (120명) ⇨ (**개편후**) 소수정예 300명에 대해 교육→사업화 일괄지원

○ **점포형 업종 지원**에서 **비점포형 업종***까지 확대하여 **점포 체험 이 곤란한 비점포형 업종**도 **오피스형 사무실 및 사업화 지원**

* IT기반 업종, SOHO, 프리랜서, 전문서비스업종 등의 경우

○ 체험점포시 이론교육 외에 상시 경영교육까지 지원하도록 체험점포와 교육장을 ONE-ROOF화하여 **창업과 성장 지원 기능을 통합**

□ 예측정보 강화 등 상권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

○ AI시스템*이 시장 환경 및 경영현황 분석을 통해 **최적의 경영전략을 제안**함으로써 창업생존율 제고

* 지역·업종별 성공유형 모델링 후 시장 분석을 통해 메뉴, 가격 등 경영전략 제시

○ ‘**창업기상도**’를 통해 매출·업종 등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위협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상상황을 예보 → 대응역량을 제고

* 업종, 지역별 생애주기를 매출, 고객, SNS 등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도입·성장·성숙·쇠퇴기로 분류하고 창업·운영·폐업의 적합 시기를 분석

| 상권정보시스템 | 창업기상도 |
|---|---|
|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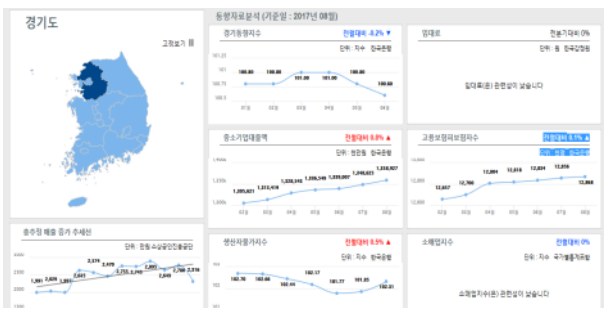 |

## □ 소상공인 한계·과밀업종 지정을 통해 과당경쟁 완화

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신청이 많은 **음식업, 소매업** 등을 대상으로 **영업이익, 소상공인 수, 폐업률** 등을 고려하여 과밀업종 시범 지정

* 기초 지자체, 세세분류 기준, 영업이익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업종을 선정

○ **한계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**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금리 등 **패널티 부과를 통해 창업 억제 유도**

○ 전국 시·군·구별 과밀업종 조사,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**전국 주요 상권별 과밀업종 지정**('18.하)

# 소상공인 성장 지원

## □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

○ '22년까지 발굴·육성의 2-Track* 방식으로 **혁신형 소상공인 1.5만명을 양성**하여 **소상공인의 롤 모델로 확산**

* (발굴) 이미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공모로 선정
(육성)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인정되는 소상공인

○ 선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에게는 **판로, 자금, 교육·컨설팅 등을 성장 수준별 맞춤형**으로 **연계 지원**하고,

- 혁신형 소상공인의 **성공노하우 전수**(강사 활용, 네트워크 구성 등) 및 **성공사례 확산**(홍보, 박람회, 포상 등)을 통해 성과 확산

□ **협동조합 협업촉진 및 규모화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**

○ 규모·업종·역량별 **맞춤형 지원체계 구축**하고, 한국 실정에 적합한 협동조합 **유형별 차등지원**으로 **선도형·체인형 조합 집중 육성**

* 유형별(일반형, 선도형, 체인형) 2억원 ~ 5억원 한도 차등지원

- (**일반형**) 全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지원한도를 **상향 조정(1억원→2억원)**하고, 규모화를 통해 **선도형 조합으로 육성**

- (**선도형**) 안정적 수익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**성장잠재력이 높은** 일정규모(조합원 10개사) 이상의 조합을 **선도형 조합**으로 **육성**

- (**체인형**) **프랜차이즈시스템** 도입, **전국단위 규모화**에 적합한 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**체인형 조합 발굴·육성**

○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**협업인큐베이팅 신설,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**을 통한 지원 인프라 확충

- 조합원 신뢰구축, 조합 특화교육, 비즈니스모델 설계 등 **체계적 설립을** 위한 **'협업인큐베이팅' 신설**

- 소상공인협동조합 **전용교재·교육과정 개발**하고, **지역별 기본·전문교육과정 운영**을 위한 **'협동조합아카데미' 설치**

* 광역시·도 단위 6개 거점지역에서 우수·실패 사례 케이스 스터디 등 이론·실습 교육

□ **동네슈퍼 체인화를 지원하여 자생력 제고**

○ **(추진모델)** 유럽 슈퍼조합 사례(코나드, 레베 등) 및 편의점 가맹본부 등을 벤치마킹하여 **조합형 프랜차이즈 사업모델** 추진

* 연합회가 가맹본부, 지역조합은 지역본부, 개별점포는 가맹점 역할 분담

○ **(지역 체인화)** 성공가능성 있는 **슈퍼조합의 체인화 역량 집중 육성**

- 물류센터 기반의 공동구매·상품배송, 점포환경개선 및 경영지원 등으로 충성조합원을 확보하여 체인사업 저변 강화

* 체인점포는 지역조합 상품을 50%이상 구매하고, 점포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수혜

○ **(전국 체인화)** 공동브랜드, 전국단위 공동구매 및 공동마케팅, 체인사업 시스템 구축, 상권특성별 점포모델 개발·보급 등

## □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

○ 청년고용 특별자금 확대(400억원 → 2,000억원) 등 정책자금을 **일자리 중심으로 개편**하고, 매출연동 상환자금 신설(200억원)

| 기 존 (2017년) | |
|---|---|
| **경영안정자금** (9,850억원) | · **일반경영안정자금** (9,350억원) |
| | · **수출·고용특별자금** (500억원)<br>*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수출소상공인자금 |
| **성장기반자금** (6,400억원) | · **소공인 특화자금** (4,100억원) |
| | · **성장촉진자금** (2,300억원) |

⇒

| 변 경 (2018년) | |
|---|---|
| **경영안정자금** (9,025억원) | · **일반경영안정자금** (7,025억원) |
| | · **청년고용특별자금** (2,000억원)<br>* 규모 대폭 확대 및 수출소상공인자금 폐지 |
| **성장기반자금** (6,800억원) | · **소공인 특화자금** (4,500억원) |
| | · **성장촉진자금** (2,300억원) |
| **특별자금** | · **매출연동 상환자금** (200억원) |

○ **조기상환 패널티 폐지*, 자금신청 절차 간소화**** 등 수요자 편의성 강화

* 경영여건에 따라 원금을 패널티 없이 자유롭게 조기상환 하도록 허용

**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자금추천서(소상공인지원센터 발급)를 폐지

□ 소상공인 **교육기회 확대, 상시 교육** 등으로 경영역량 강화

○ **(평생교육원)**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경영교육사업을 통합하고, **신사업 창업가 육성**에서 **상시 교육 지원**까지 **확대**

- 기존 **창업 단계 교육**에 **치중**되어 있는 교육을 **성장 단계별**로 **세분화**하여 **창업교육, 경영교육, 체험교육 등으로 확대**

- **전용교육장**(5개소)* **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**를 **개편**하여 **주요 시·도에 '소상공인 평생교육원' 설치**

* (설치장소) 서울·대전·대구·광주·부산, (평균 규모) 145평, (평균수용규모) 115명

< 소상공인 교육 개선(안) >

| 구 분 | | 현행체계 | 개편체계 | 개 편 내 용 |
|---|---|---|---|---|
| 소상공인교육지원 |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| 신사업 창업가 양성 | 소상공인 평생교육원 | ▪ **상시 교육 기능 강화 :** 성장 단계별로 창업교육, 경영교육 과정 운영<br>▪ **교육원 확대 :** 전용교육장 및 체험 점포를 통합하여 교육원으로 개편 |
| | 경영교육 | 전용교육장<br>경영교육<br><확대> | 소상공인 방송교육 | ▪ **방송교육 강화 :** yes TV를 통한 소상공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·방송 |
| | | 전문기술 교육 | 전문기술 교육 | ▪ **전문기술교육 :** 교육기관 성과 평가를 통해 강사, 교육과정의 품질 제고 |

○ **(소상공인 방송)**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하도록 **소상공인방송**(yes TV)을 활용하여 **창업·경영·협동조합 등**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방영

* (창업) 신사업 아이템,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창업컨설팅, 정책자금 신청 방법 등(55편)
* (성장) 마케팅 기법, 협동조합 전문교육, 업종별 전문기술교육 등(55편)
* (재기) 폐업 및 업종전환 교육, 개인회생 법률자문(20편)

- 최신 **경영 및 마케팅 기법, 경영노하우, 업종별 전문기술교육**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·송출

## □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

○ 폐업 후 **임금근로자로 전환**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**희망리턴패키지 지원** (8,000명)

- **국세청**(영세납세자지원단), 세무사회, **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력**하여 **지원사업 홍보 강화**

○ **'7전8기박람회' 개최(연 2회)**하고,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기존점포 철거 및 원상복귀 등 지원

< 소상공인 폐업 경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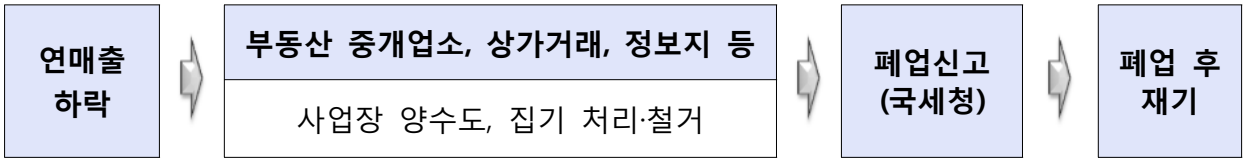

## □ 한계 소상공인의 특화형 창업 활성화

○ 업종전환·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**특화 및 비생계형 업종 교육, 컨설팅,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'재창업 패키지'** 확대
('17. 2,500명→'18. 3,000명)

- 실습, 현장견학, 상권분석 등 **실습위주 교육과정을 확대하고, 업종별 전문교육 비중 확대**

* 교육기관 및 과정 확대 : ('17) 35개 기관(63개 과정) → ('18) 40개 기관(80개 과정)
** 업종 전문교육 비중 확대 : ('17) 50% → ('18) 80%

**<폐업 소상공인 지원 체계도(계획)>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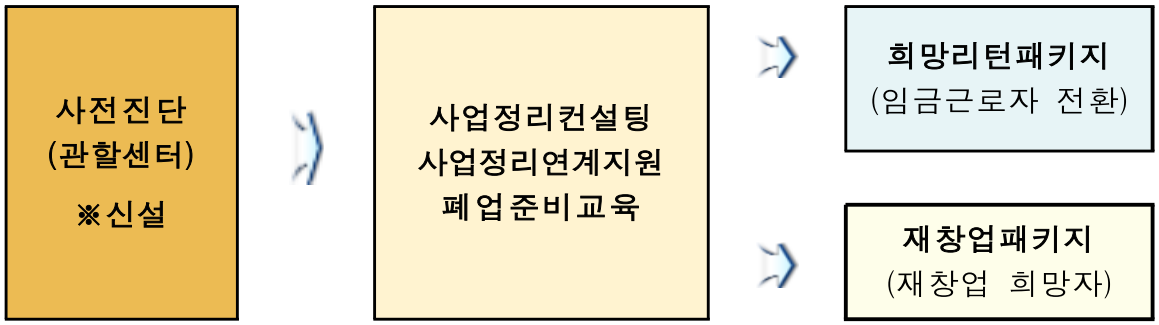


## □ 소상공인공제 확대 등 생업안전망 확충

○ **(소상공인공제)** 폐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**'22년**까지 **공제* 가입자 160만명**, 공제가입부금 **12.5조원**을 목표로 추진

* 소기업·소상공인의 폐업·사망·퇴임·노령 등 사유 발생시 적립된 납입부금(월 5~100만원 적립)을 지급('17.11월말 가입자 112만명, 공제가입부금 7.1조원)

-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**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율 부담 완화** (조특법 개정, '18.1월 시행)

* 기타소득세율 : (기존) 20% → (개선) 15%

-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**공제금 수급계좌**를 **압류금지** 대상에 포함 (협동조합법 개정, 산업중기위 계류 중)

○ **(고용보험)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및 제도개선** (고용부 협업)

-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근거 신설에 따라 경영 불안전성이 높은 **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***(1만명)

  *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월 고용보험료의 30%를 2년간 지원

- '자영업자 고용보험' **가입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가능 기간* 확대** ('18.1~)

  * 가입가능 기간 : (현행) 창업 후 1년 이내 → **(개선) 창업 후 5년 이내**

○ **(두루누리 지원) 두루누리 사업***을 통한 **지원**을 **확대**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주의 **사회보험료** 부담 완화('18.1월~)

  *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주·근로자의 국민연금·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 지원

- **최저임금 인상률**과 연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**월보수 기준**을 **상향** (140만원 → 190만원)

- **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비율을 상향**하여 가입 촉진 (60% → 80~90%)

  * 5인 미만 사업체·근로자는 90%, 5~10인 미만 사업체·근로자는 80%

○ **(건강보험)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**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는 경우 **사업주·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액 경감**('18년 한시, 50%)

## ③ 우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

### □ 소공인에 적합한 판로지원 강화

○ 소공인 **판로지원 사업*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**하도록 개편(300개사, 3천만원 한도)

* 온라인몰 입점, 홍보동영상 제작, 국내외 전시회 참가, 디자인 개발 등 7개 항목

- 소공인 **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통플랫폼*과 연계**하여 입점지원을 통해 판로 지원

* 국내 온라인몰: 카카오 메이커스, SK페쇄몰, 위메프 등

○ 소공인의 대표상품인 봉제, 주얼리, 수제화 등의 판로지원을 위한 **'국제 소공인 제품 전시회' 개최**('18.10, 지자체 협업)

* 행사규모(잠정) : 12,762㎡, 420개 부스(국내 340개사, 해외 80개사)

- 소공인특화센터 주관으로 전시, 판매, 바이어 상담 등 추진

### □ 소공인 제품 · 기술의 경쟁력 확보 추진

○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, 공정혁신을 위해 설비 · 장비투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**소공인 전용 특화자금 지원**('18. 4,500억원)

○ 소공인의 제품개선,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및 개발비용 지원을 통해 **제품가치 향상과 기술경쟁력 제고**('18. 120개사)

- **소공인 개발과제에 대해 전문가를 매칭**, 사업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개발계획 완성도 제고

○ 생산관리 정보화를 희망하는 소공인에 대해 실태조사, 전문가 진단을 통해 '**소공인 생산정보체계**' 구축* ('18. 25개사)

* 낙후된 소공인의 작업장 공정개선, 재고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

## □ 소공인 집적지의 클러스터화 지원

○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 및 공동활용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한 **'소공인 집적지구' 지정을 지속 확대**('18. 5곳)

* 소공인 집적지에 공동장비, 전시·판매장, 공동창고 등 공동 활용시설 구축 지원

- 집적지구 신청 주체를 시·도지사에서 **시장·군수·구청장까지 확대**하고, **산업단지를 포함**시켜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

* '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'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(홍의락 의원, '17.11.2)

○ 집적지 소공인특화센터 지원역량 전문화·고도화를 통해 공동구매, 공동 R&D, 공동 판로개척 등 **소공인의 혁신화 유도**('18. 40곳)

- 특화센터 운영인력 및 집적지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마케팅, 수출, 협업 등 **분야별 역량강화 전문교육*을 실시**하여 **맞춤형 지원 강화**

* 운영인력(수출, 마케팅, 협업교육 360명), 소공인(기술·경영교육 1,200명)

## □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·육성

○ 집적지별 특성에 맞는 숙련기술 교육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우수 숙련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,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

- 소공인 특화센터와 기능대학 등을 연계한 **기술교육훈련기관(5곳)을 지정**하여 **숙련기술인(200명) 양성** 및 기술매뉴얼 제작·활용

○ **숙련기술인 종합정보망을 구축**하여 全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생애전환기(폐업·은퇴 등) **숙련기술인의 창업 및 재취업* 지원**

* 지방청, 지자체, 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숙련기술인 취업박람회 개최(상·하반기)

## ④ 고객이 감동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

### □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

○ **공무원 복지포인트(30%) 및 신규 복지수당**(아동·청년수당 등)의 온누리상품권 **지급을 차질없이 추진**

*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규모 : ('17) 10% / 843억원 → ('18) 30% / 2,529억원
** (복지수당) 복지부 등 지급부처와 협업으로 지급규모·전달체계 등을 마련 시행

○ 온누리상품권의 **3대 장점을 집중 홍보**하고, **기업의 구매동참 유도**

* 3대 장점 : ①착한가격, ②온누리상품권 구매할인(5%), ③소득공제 혜택

### □ 화재걱정 없는 전통시장 조성

○ **(시설개선) 화재안전 취약시장**별로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한 **개선계획 제출 의무화** (미제출 시장은 시설현대화 지원 배제)

-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**화재알림시설 및 자동 화재 속보장치를 '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설치** ('18. 32천개 점포)

- 시설현대화 추진 시, **화재안전 취약시설 개·보수를 우선추진***하고, 주요 화재 원인인 **노후전기 설비 교체·정비**('18. 100곳 → '20. 300곳)

* 사업비의 12.5% 이상을 화재예방시설에 의무 편성하고, 미이행 시 3년간 지원 제한

○ **(안전점검) 화재 안전지킴이**(83명, 지방청·소진공)를 임명하여 안전 **취약요인 발굴**(주1회 이상 방문점검) → **즉시 해소 지원 추진**

* 지자체·소방청·전문기관과 합동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, 화재안전 캠페인·홍보 등

- 소방·가스 등 **주기적 안전점검*** **실시**(358곳, 6.1만개 점포) 및 **상인회 중심 자율적 화재예방 노력**** **강화**

* 소방·가스 전문기관과 연계, 전체시장 대상 3년 주기('16~'18년) 안전점검 실시
*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·운영 확대('15. 51.9% → '18. 80%)

○ **(예방교육)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매뉴얼 제작·배포** 및 교육

-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등 **화재안전 교육 콘텐츠**를 활용, 상인대학 등을 통한 **안전교육 이수 필수화**

## □ 전통시장 국민대표 맛집 블로그 운영

○ **전통시장 국민대표 맛집 블로그를 구축** → 신뢰하고 다시 찾는 전통시장 **전문 홍보채널로 활용**

* 안전지킴이(83명), 시장매니저(240명)를 기자단으로 활용하여 현장감과 신뢰 확보

○ 전통시장 블로그와 **SNS 채널별**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카카오스토리 등) **'맛집' 블로그를 연계**한 이벤트* 진행 후 경품(온누리상품권) 지급

* (예시) 블로그에서 소개된 '맛집' 앞에서 찍은 인증샷 공유 및 해시태그 이벤트

## □ 「희망사업 프로젝트」 신규 도입

○ 정부 주도의 **하향식**(Top-down) **방식 ➜** (시장)상인 주도의 **상향식**(Bottom-up) **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**

○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, 고객감동형 시설구축 등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**패키지 형태로 지원**(25곳)

* 사업선정기준(Negative list: 개별점포 직접지원, 1회 행사성 사업, 건물주·상인 동의 50%미만, 사행성 시설 설치 등)을 제시하여 신청남발 방지

**< 희망사업 프로젝트 추진유형(예시) >**

◇ **청년중심 프로젝트**(10곳) : **청년몰 + 사회적기업(협동조합) 창업**

* 민간(대학, 대기업)협업사업, 청년 취업센터(고용부), 엑셀러레이터 연계 교육 등

◇ **유통+복지가 결합한 지역커뮤니티 구축** 프로젝트(10곳) : **특성화사업+시설현대화**

* 유통+복지가 어우러진 세대 융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(어린이집·장난감도서관, 방과 후 교실, 공공 회의실 등)

◇ **문화관광형 프로젝트**(5곳) : **특성화사업 + 관광인프라 구축사업**

* 고급화장실, 첨단 주차장, 특화먹거리 개발, 간편결제시스템, 통역 및 관광안내원 배치, 전통시장 축제 등

○ **'특성화 첫걸음 시장' 지원제도를 통하**여 그간 지원받지 못했으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, **기초역량 배양 지원** (60곳)

* 상권육성 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장별 특색발굴, 3대 서비스(편리, 신뢰, 청결) 혁신 등을 지원 → 성과 우수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 후보로 상향시켜 지원

「2018년도 업무계획」에 대해

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

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로
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대표전화) 042-481-4543